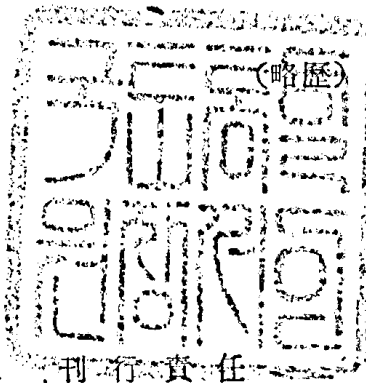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安保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國際會議에서 提起된 列強의 韓半島 問題 解決方式에 關한 研究 (1943-1977)

—A Study on the Proposed Solutions of the Korea
 Question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1943-1977—

研究執筆責任 朴 奉 植



(略歷) 서울大學校 政治學科卒業(1955)
 서울大學校大學院 政治學科卒業(1957)
 서울大學校 政治學博士(1976)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教授(1956-現在)

刊行責任 朴 鏞 德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要 約 文

本 論文은 1943年 카이로·테헤란會議 以後 最近에 이르기까지 主要國際會議에서 提起된 韓半島에 對한 列強 또는 有関國의 政策을 研究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研究의 方法은 각기 提起된 政策的姿勢의 內容을 分析하는데 主 力하였다.

따라서 本 論文은 첫째로 第二次 世界大戰中 列強首腦會議에서 提起된 韓半島에 對한 政策立場을 먼저 比較的 자세히 分析하였다. 戰爭이란 旧秩序를 破壞하는 한편 새로운 秩序를 세우는 과정이기 도 하기 때문에 어떤 問題에 對한 當事國의 政策이 가장 포괄적 으로 表現된다고 하겠다.

戰中의 境遇 韓半島問題는 처음에는 日本으로 부터 無條件降伏을 받는다는 原則에 따라 戰後 日本의 領土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決定의 結果 여기에 「韓國人의 奴隸的狀態를 고려하여」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韓國을 獨立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세워질 政府가 어떠한 性格의 것이어야 하는가는 이때 아직 명백히 되지 않았다. 그러나 蘇聯이 日本에 參戰하게 되는 것과 時期를 前後하여 이 問題가 가장 重要한 問題로 등장 한다.

이 問題는 本 論文의 第3章으로 項目을 바꾸어서 다룬다. 韓半島에 어떠한 政府를 세워야 하느냐의 問題는 1946年 봄부터 始作된 美·蘇共同委員會에서 명백히 나타났다. 卽 美·蘇兩側 首席代表는 1946年 3月 20日 開會聲明을 發表하였는데 여기서 蘇聯側의 Shtikov 將軍은 The Soviet Union has a keen interest in Korea being a true democratic and independent country, friendly to its Soviet Union, so that in the future it will not become a base for an attack on the Soviet Union 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當時 韓國에서 信託統治 (trusteeship) 을 反對하고 右翼陣營이나 民族陣營의 勢力을 제거하려는 立場을 명백히 하였다.

여기에 對하여 美國은 政治的見解의 自由스러운 表明을 처음부터 거부하려는 蘇聯의 立場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러한 蘇聯의 立場은 韓半島에 親蘇政府를 세우려는 것이 너무도 明白하였기 때문이었다.

美·蘇共同委員會는 이러한 美·蘇兩側 軍司令官의 代表間의 見解 對立으로 統一된 政府를 樹立하는데 失敗하고 말았다. 따라서 美國과 蘇聯은 信託統治를 通하여 民主 獨立政府를 세우는데 失敗하였기 때문에 各各 占領한 地域을 繼統 維持하는 政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美國은 韓半島全體가 蘇聯의 影響下에 들어가는

것은 反對하나 그렇다고 南韓을 維持하기 위해 犧牲을 치를 용의가 있다는 積極的인 자세는 取하지 않았다. 特히 美軍部에서는 南韓이 戰略的으로 별 價值가 없으며 美國의 繼統的인 介入은 軍事的으로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었다.

이러한 消極的인 태도에서 韓國의 单独政府樹立을 不可避하게 받아들였고 이를 유엔과 연결시켜 놓는데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다음 第四章에서는 1953年의 休戰協定과 1954年의 제네바會議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1954年의 제네바會議가 休戰協定 第4條에서 規定하고 있는 政治會議(political conference)와의 關係를 說明하고 이어서 제네바會議에서의 西方側과 共產側의 立場을 分析하였다.

제네바會議에서는 대가 冷戰의 絶頂期였기 때문에 西方側이나 共產側이나 이 會議에서 韓半島問題에 어떤 妥協點을 發見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南北韓에 独自の인 政府가 成立하기 前에는 美·蘇間의 合意가 主要하였지만 일단 對立的인 政權이 생긴以上 이들의 見解가 더 重要性을 갖기 始作하였다는 點과 그리고 韓半島政治에 中夫·이란 새로운 参加者가 생겼다는 點이 美·蘇 共同委員會 以前의 韓半島問題보다 더 狀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하겠다.

第5章에서는 「유엔에서의 韓國問題」를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유엔이 美國外交의 instrument로서 利用되고 있는 時代에 美國이 유엔을 통해 美施한 여러 가지 韓國에 關한 措置를 維持하고

확인하는 것이 全部였고 또 共産側은 이러한 유엔의 措置를 否認하거나 北韓도 유엔에서 南韓과 同等한 取扱을 받게 하려고 努力하였다.

이러한 共産側의 努力은 中共의 유엔 参与와 所謂 第三世界諸國의 유엔 加入 등으로 실현이 되었다. 卽 1973年 第28次 유엔 總會 때에 北傀가 韓國과 같이 유엔에 代表部를 設置하였으며 유엔의 各 機關에서 同等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 후 韓國問題의 脫 유엔化도 推進되었는데 그 첫 case가 第28次 유엔 總會에서 결정된 UNCURK 解体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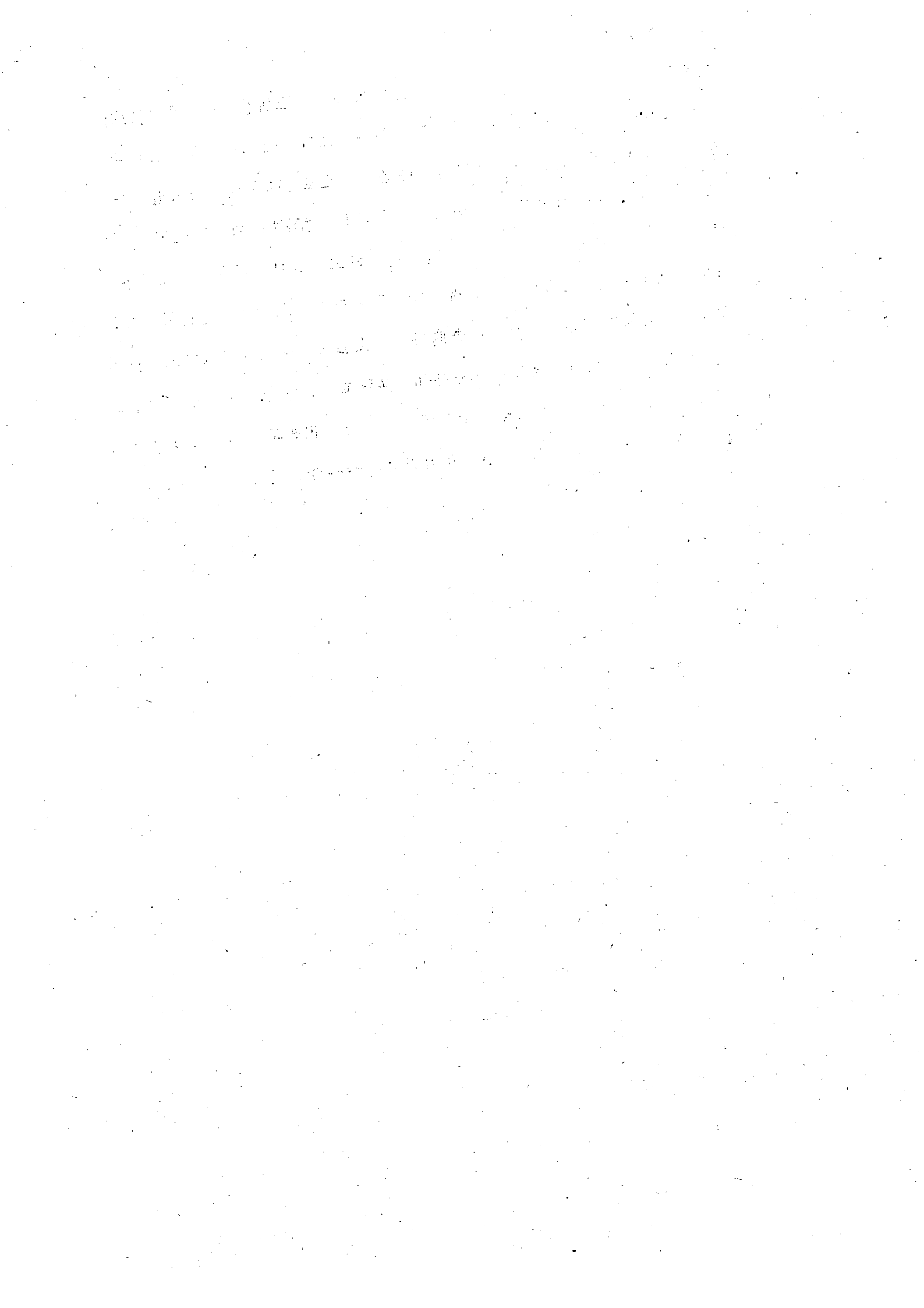
北傀는 종래 유엔이 韓國問題에 介入하는 것은 不法的인 것이라고 해왔는데 1973年以後는 韓國에 外勢가 介入하고 있는 現狀이나 유엔旗의 不法使用等은 유엔이 除去해 주어야 한다는 立場을 取하고 1975年 30次 유엔 總會에서는 美國과 北傀가 休戰協定の real parties로서 平和協定을 締結하여야 한다는 決議案을 採択시키기에 이르렀다.

北傀가 美國과 直接 平和協定을 締結하겠다는 것은 우선 北韓의 對南赤化戰略에 美國이 同調할 것을 要求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美國은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美國은 1975年 9月 키신저의 유엔 總會에서의 演說以來 南北韓이 먼저 直接 對話와 接觸을 通해 關係를 正常化할 것을 要求하고 그 위에 美·中共을 包含한 4者會談을 제의하면서 北傀의 直接協商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第6章에서는 1978年 3月 Tito 大統領의 美國訪問을 기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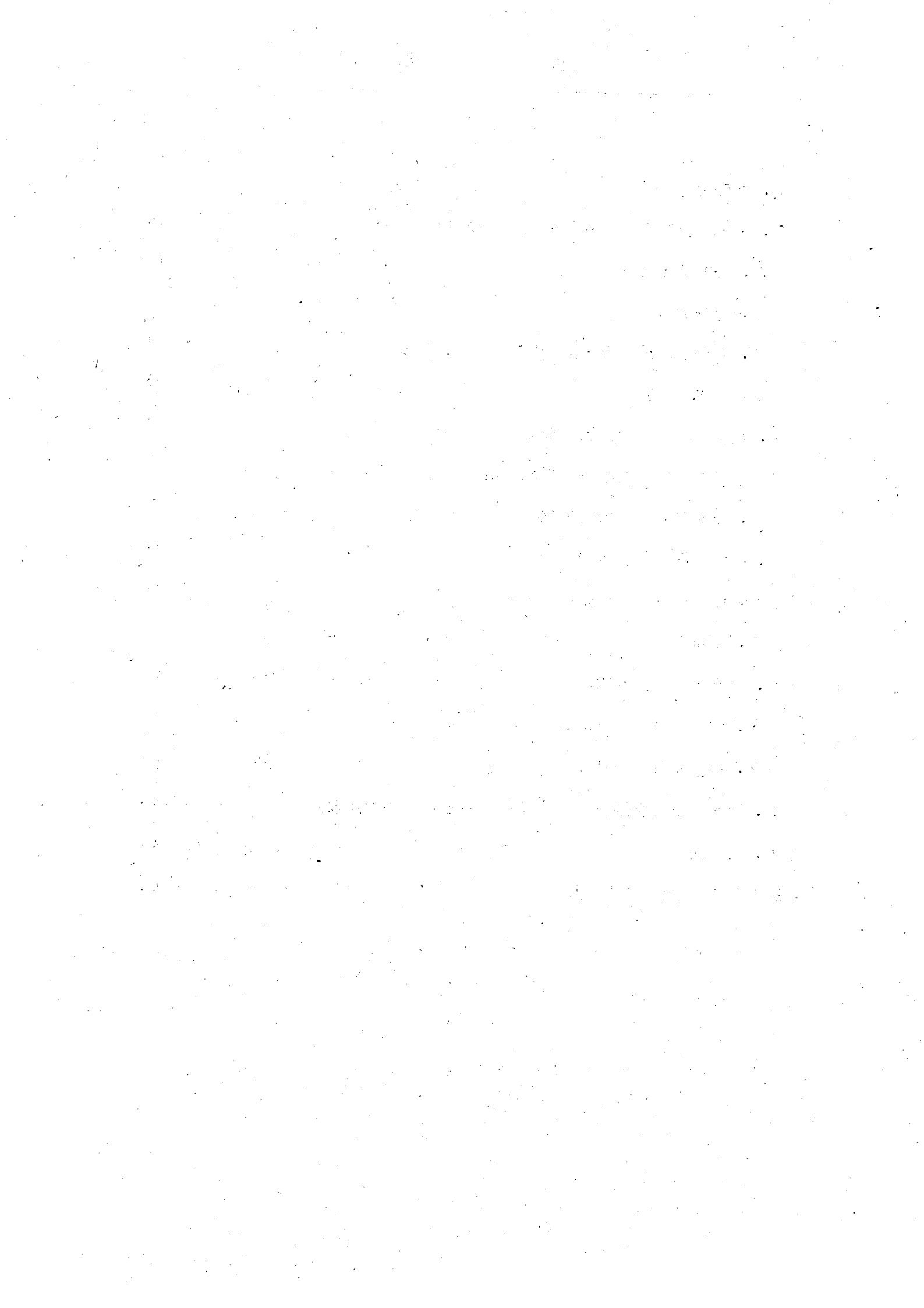
提起된 所謂 三者會談에 關한 分析이다. 三者會談은 四者會談보다 北傀의 立場을 유리하게 해 주는 面이 있으며 또 美國의 北傀 敵對視政策 포기의 時期에 나온 것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는 다고 하겠다. 여기서도 美國은 南北韓의 對話再開가 前提되고 있으나 美國이 對北韓修交의 原則을 申明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은 이러한 狀況의 變化를 利用하려 할 것이라고 筆者는 판단하였다.

北傀는 經濟的 必要에서 西方側과의 接觸의 擴大를 願하고 있는 데 이것의 切實性의 程度에 따라서 그리고 美國을 위시한 西方側이 南北對話의 先行을 繼續 高집해 준다면 北傀도 그들의 政策을 다소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目 次

1. 머리말	9
2. 戰中 首腦會議에서의 韓半島問題	10
A. 카이로·테헤란會議	10
B. 알타會議	14
C. 알타會議後 美·蘇關係의 變化	21
D. 포즈담會議	24
3. 戰爭終結과 韓國政府樹立	35
A. 모스크코三相會議와 信託統治	35
B. 유엔과 單獨政府樹立	40
4. 休戰協定과 제네바會議	45
A. 休戰協定과 列強의 態度	45
B. 제네바會議	48
5. 유엔에서의 韓國問題	55
A. 韓國側의 유엔政策	55
B. 共産側의 유엔政策	58
6. 所謂 三者會議說을 前後한 列強의 韓半島政策	60
7. 結 論	64
脚註	66



1. 머리말

韓半島問題의 解決은 南北韓當事者들에 의하여 이룩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그러나 所謂 韓半島問題의 生成과 그 동안의 경과 및 現在 問題의 性格으로 보아 南北韓當事者의 見解 못지않게 韓半島에 對한 列強의 政策的立場은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 研究에서는 韓半島 分斷의 始原的인 契機라고 할 수 있는 戰中 列強들의 韓半島에 對한 戰略的考慮에서 부터 始作하여 最近에 이르기까지의 政策的立場을 分析해 보고져 한다.

따라서 과거 흔히 論難되어 왔던 韓半島의 38 線이 어떠한 經緯의 目的으로 設置되었던가의 角度에서 보더라도 韓半島를 列強들이 어떠한 戰略的 觀點에서 보았던가를 分析 整理함으로써 現在의 問題의 性格에 照明해 보고져 한다.

그러므로 本 研究는 ㆍ戰中ㆍ 主要會談에서 始作하여 ㆍ戰後ㆍ 建國의 過程 그리고 그 後 ㆍ6.25 戰爭 以後의 제네바會議等ㆍ에서 列強國들의 立場을 分析한다. 이어서 그 뒤 ㆍ1977年까지는 유엔總會를 中心ㆍ으로 그들의 立場과 政策的姿勢를 分析 整理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研究는 유엔總會에 關한 部分을 除外하고는 거의 美國側에서 發表한 資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事情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2. 戰中 首腦會談에서의 韓半島問題

A. 카이로·테헤란 會談

戰中 韓國問題에 關한 列強들의 公式的인 최초의 言及은 1943年 12月 1日에 發表된 所謂 카이로宣言으로서 그 內容은 主知되고 있듯이 美·英·中國 三箇國首腦가 「韓國人의 奴隸的 狀態를 유의하여 韓國은 적당한 時期에 自由 獨立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었다.

이러한 決定은 日本으로 부터 無條件 降服을 받는다는 聯合國의 共通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取해지는 極東問題 處理의 한 方法이자 그 內容이었다.

이러한 決定에 이르기까지 列強들의 極東地域에 對한 戰略的 考慮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問題는 蘇聯의 對日參戰의 問題와 密接히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카이로(第1次 1943年 11月 22日부터 26日까지, 第2次 1943年 12月 2日부터 7日까지)와 테헤란(1943年 11月 27日부터 12月 2日까지)에서의 首腦會議는 戰勢가 獨逸의 勝勢가 極에 達해 下降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였으므로 이 問題가 論議되기 알맞은 時期였다.

테헤란會議 以前에 蘇聯과 美國과의 최초의 高位會談도 1943年 10月 모스크외相會議였으나 여기서는 共同으로 戰爭을 끝까지 수행하고 戰後 國際機構를 만든다는 合意한데 지나지 않으며 戰後處

理와 關聯된 問題는 한달뒤에 열린 元首會議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카이로會議에 임하면서 美國側은 여러 가지 試案을 檢討하였는데 그 中 「蘇聯參戰에 對한 中國의 態度」와 關聯해서 軍首腦들은 論議하였는데 여기서 韓半島와 關聯된 部分은 다음과 같다.

「大統領은 中國人이 外蒙古에 對해 蘇聯과 同等權을 願하며 滿洲의 回復을 願한다. 이들 問題는 難關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自由地域 (free zones) 의 方法으로 解決이 可能할 것이다. 蔣總統은 蘇·中國·美國이 參與하는 信託統治를 韓國에 實施할 것을 願한다고 하였다.」

「마샬將軍이 말하기를 蘇聯은 日本에 近接해 있는 Kuzan(Pusan?) 을 願하고 있다고 하였다.」

「킹捷督은 蘇聯은 크고 좋은 港口와 大連에의 連絡路를 願하고 있다고 하였다. 2)」

다음 카이로會議中인 1943年 11月 23日저녁 루즈벨트大統領과 蔣總統間의 會談에서 여러 問題에 걸친 言及中 韓國問題에 關한 部分은 다음과 같다.

「루즈벨트大統領은 韓國 印支의 將來 地位와 泰國을 包含한 다른 植民地域 問題에 對해 美·中兩國이 相互諒解에 도달하는것이 좋다는 意見을 提示하였다. 蔣總統은 여기에 同意하면서 韓國에는 獨立을 부여할 必要가 있다는 點을 強調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3)

이러한 蔣總統의 見解를 루大統領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으며 4) 한편 蘇聯의 見解로 「4大強국이 参与하는 信託統治下에서 韓國을 獨立시키는 일에는 蘇聯의 態度에는 變化가 없으나 不凍港에 對한 態度는 아무 시사도 없다」 5) 고 하고 있다.

그리고 1943年 11月 24日 中國側은 카이로에서 美側에게 戰後問題에 關한 寬釋을 전달하였는데 그 中 「敗戰한 日本에 對한 措施」란 大목에서 「中國 英國 美國은 戰爭後 韓國의 獨立을 承認하는데 合意하여야 한다. 韓國獨立承認을 위한 協定에 蘇聯이 參加한다면 언제든지 歡迎한다.」라고 되어있다. 6)

이렇게하여 韓國獨立에 關한 所請 카이로宣言이 나오게 되었다.

테헤란에서 韓國問題에 對한 論及은 루즈벨트·처칠·스타린 三者의 昼食을 兼한 會談에서 처칠이 카이로會議의 極東問題에 關한 커뮤니케를 읽었느냐의 質問에 對해 스탈린이 答함으로서 생겼고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即 「韓國이 獨立되어야 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滿州 台灣 및 澎湖諸島가 中國에 返還되어야 한다. 그러나 中國은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싸우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고 하여 中國이 이들 地域을 正當하게 회복하려면 戰鬪에 効果的으로 參加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감을 주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어서 極東과 不凍港問題에 關해 蘇聯政府의 見解를 묻는 처칠의 質問에 對해 스탈린은 極東에서 積極的인 活動을 하게 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도 極東에는 蘇聯의 不凍港이 없으며 브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 는 半은 凍港이며 또 日本이 支配하고 있는 海峡으로 막혀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 루즈벨트가 大連을 國際的保障下에 自由港으로 하는 의견을提示하였으며 스탈린은 이 案을 中國人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伝한다. 8)

테헤란會議에서 蘇聯의 對日參戰과 거기에 따르는 問題가 仔細히 論議되기에는 時期가 이른 것이었으며 따라서 韓國의 獨立 및 信託 問題와 其他 北太平洋地域의 一般的인 問題가 論議되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카이로로 돌아와서 12月2日에 作成된 「日本敗北를 위한 全面計劃」에 나타난 內容에서 參考가 되는 것은 日本을 敗北시키는 데 있어서 日本本土 上陸이 꼭 必要한 것은 아니며 海空封鎖와 前進基地로 부터의 空中爆撃으로도 足하다고 하고 있는 点이며 다음으로는 韓半島의 그 뒤의 運命과 密接히 關聯이 있는 北太平洋 戰線은 설혹 蘇聯이 參戰하여 그 重要性이 높아지는 境遇에 있어서도 中太平洋戰線에 對한 補助戰線으로 보고 있는 点이다. 9)

이러한 見解는 蘇聯의 뒤늦은 對日參戰에도 不拘하고 滿州와 韓半島에 蘇聯의 進軍을 許容하게 되는 原因이 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카이로·테헤란會談이 끝난 다음 와싱턴에서 열린 太平洋 戰爭國會談 (Pacific war council) 參加者들을 위한 會談結果를 說明하면서 1944年1月12日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스타린이 特히 同意한 것은 滿州 台灣 澎湖島가 中國에 返還 될것, 韓國人은 獨立政府를 유지할 能力이 없으므로 約 40年間 後見下에 둠이 좋다는것, 蘇聯도 시베리아에 不凍港을 갖고 있지 않으며 不凍港을 하나 願하고 있는데 大連을 自由港으로 하여 시베리아의 輸出入用으로 使用하는 案에 뜻을 가지고 있으며 滿洲鐵道는 中國에 歸屬되어야 하며 蘇聯은 全樺太와 千島列島를 시베리아에 通하는 港峽을 制御하기 위하여 가질것을 願한다.」¹⁰⁾ 고 하였다.

以上에서 보면 카이로와 테헤란會談에서는 먼저 日本이 無條件降服할 때까지 싸운다는 것과 日本으로 부터 中國과 對日參戰의 境遇 蘇聯이 一定한 領土를 取得키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狀況에서 韓國은 「適當한 時期」(in due course)에 獨立시키기로 하였던 것이 韓國問題에 關한 論及이다. 그리고 蘇聯이 不凍港을 願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며 韓國海峽에도 蘇聯이 關心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B. 알타會談

위에서도 言及한 바 있으나 戰中 列強의 韓半島問題에 對한 論及은 對日無條件降服의 條件 또는 그 內容으로서 韓半島의 獨立이었고 또 그것은 蘇聯이 對日戰爭에 參加하는 狀況에 따라 影響을 받는 性質의 것이었다.

카이로와 테헤란會談에 이어, 獨逸의 敗北를 目前에 둔 列強은

알타 (Yalta) 에 모여 戰後世界秩序問題와 蘇聯의 對日參戰問題
를 보다 구체적으로 論議하게 되었다.

蘇聯의 對日參戰問題는 첫째로 蘇聯參戰의 條件 特히 政治的條件 ,
둘째 對日作戰遂行에 있어서 美·蘇의 相互協調事項, 셋째 對日戰爭
終結後의 政治·軍事의 問題 處理等이 主要 事案이었으며 韓半島問題
處理도 이러한 狀況에서 取扱되었던 것이다. 11)

그리고 對日戰爭關係를 論議함에 있어서 基本的問題의 決定은 頂
上會談에서 政治問題는 外相會議, 作戰關係事項은 軍事參謀會議에서
되었다.

알타會談에 關한 美國側의 公開發된 記錄¹²⁾에 의하면 美國政府는 會
談을 앞두고 各種의 狀況判斷書 計劃書等을 作成하였는데 韓半島에
關해서도 「韓國의 戰後地位」¹³⁾란 一件의 文書가 있음을 본다.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即 美國이 英·中國, 그리고 事勢에 따라서 蘇聯과 協議할 事項
은, (1) 韓半島의 軍事占領에 參加할 國家, (2) 過渡期的인 國際管理
또는 信託管理에 參加할 國家等인데 (1)項과 關聯해서는 韓國問題가
國際性을 띠고 있기 때문에 軍事占領과 軍事政府에는 聯合軍各國이
代表되어야 할 것이며 이 代表의 境遇 美·英 및 中國 그리고
蘇聯이 參戰한다면 蘇聯等 韓國의 將來에 利害가 많은 國家들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他國의 參加는 美國의 美權을 弱화하지
않을 정도라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2)項에 關해서는 美·英·中·蘇가 參加하는 國際管理 또

는 信託統治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어서 「韓半島에 關한 聯合國間 協議」란 小題目에서 上記 要
旨을 다시 「問題」와 「討議」란 項目으로 說明하고 있다.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問題」

「어느 나라가 韓半島의 軍事占領과 國際管理 또는 信託統治에
參加할 것인가」이다.

「討議」

「韓國을 獨立시킴과 關聯하여 共同行動의 重要性和 必要性은 다
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다.

- 1) 中·蘇는 韓國에 連接해 있으며 韓國問題에 傳統的으로 利
害關係를 가져왔다.
- 2) 美·英·中國은 카이로宣言에서 適當한 時期에 韓國은 自由
獨立되어야 한다고 公約하였다.
- 3) 單一國에 의한 韓半島의 軍事占領은 深刻한 政治的 反撥을
일으킬 것이다.」

「聯合軍의 陸·海·空軍 作戰에 關한 問題는 순전히 軍事的인
性格의 것임으로 國務省이 關與할 事項이 아니나 어느 한 나라만
에 의한 韓半島內의 軍事作戰과 뒤이은 軍事占領은 심대한 政治的
結果를 초래할 것이다. 中國은 韓半島에서 軍事政府의 責任을 蘇
聯이 단독으로 맡는 境遇 이것은 滿州와 華北에서 蘇聯의 影響權

이 설정되는 事態로 이어질까 두려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蘇聯은 中國이 그러한 境遇 分개할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에서 戰鬪行動이 끝남과 同時에 韓國의 占領軍 및 軍事政府에 聯合國이 參加해야 하며 이 軍事政府는 個別的인 占領地域으로 分割되지 않은 單一的인 單位로서 中央集權的行政의 原則에 입각하여 세워져야 할 것이다. 聯合國의 參加는 韓國의 將來에 進정으로 利害關係를 가진 나라가 참여하여야 하며 占領과 軍事政府에 있어서 指導的役割을 해야 한다. 」

「 韓國의 軍事占領에 어느 나라가 參加할 것인가의 問題는 重要한데 그 理由는 , 첫째로 夾側要請에 의하여 韓國의 軍事占領問題는 現在 進行中인 美·蘇·中 外務部研究問題中에 包含되어 있지 않으며 , 둘째 蘇聯의 對日參戰은 蘇聯軍의 韓半島에의 出現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占領軍構成을 決定함에 있어 重要한 要因이 될 것이며 셋째 蘇聯軍이 太平洋地域에 參戰하지 않더라도 蘇聯의 傳統的 利害關係로 보아 軍事占領에 참여하려고 원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

「 다음으로 重要한 問題는 國際的管理 또는 信託統治에 參與할 나라의 問題인데 極東에 있어서 蘇聯의 地位로 보아 蘇聯이 太平洋戰爭에 參加하건 않건間에 過渡的 國際行政에 蘇聯을 參加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以上에서 보면 美國務省에서는 여러 가지 境遇를 고려한 會談에 對備한 研究를 하였는데 실제 會談에서는 對日作戰에 關聯된 政治

軍事問題가 주로 論議되었고 韓半島問題에서는 韓國信託統治에 參加할 나라의 問題를 討議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45年 2月 8日 알타에서 美·蘇首腦會議의 內容중에서 「極東：蘇聯의 要望」 小題目下의 記錄을 通해 蘇聯參戰에 따른 問題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스타린元帥는 蘇聯이 對日戰爭에 參戰할 政治的 條件에 關해 討議하기를 願한다고 하고 이 問題는 이미 해리만(Harriman)大使와 討議한 바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 對해 美國大統領은 말하기를 그 討議에 關해 報告받았다고 하고 戰後 樺太의 南半과 千島列島가 蘇聯에 歸屬되는네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蘇聯의 極東에서의 不凍港問題에 關해서는 元帥(스타린)가 德黑蘭會談서 이 點을 論議하였던 사실을 想起하라고 하고 이어서 當時 南滿洲鐵道の 南端에 있는 大連을 시사한 바 있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스타린元帥는 또 滿洲鐵道の 使用에 關하여 말하면서 露西亞皇帝가 滿州里로 부터 哈爾濱(Harbin), 哈爾濱으로부터 大連, 旅順까지 그리고 동시에 哈爾濱에서 東쪽으로 니콜스크·우스리스크(Nikolsk-Ussurisk)로, 그곳에서 하바로브스크(Khabarovsk), 그리고 브라디브스토크(Vladivostok)에 연결되는 鐵道를 使用한 바 있다고 말하였다.」

「스타린元帥는 이러한 條件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自己나 모로토프(Molotov)가 蘇聯人民에게 蘇聯의 對日參戰理由를 說明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¹⁴⁾

그리고 「信託統治」題下の 美・蘇首腦對話 內容은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大統領은 스탈린元帥와 信託統治問題를 討議하기를 願한다고 하고 韓國에 對하여 美・蘇・中國서 各 1人의 代表로 構成되는 信託統治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比律賓의 經驗에 비추어 韓國의 境遇, 그 期間은 20年 乃至 30年이면 좋을것이라고 하였다.」

「스타린元帥는 그 期間은 짧을수록 좋다고 말하고 韓國에 外國軍隊가 駐屯할 것인지를 問議하였다.」

「여기에 對해 大統領은 否定的인 對答을 하였고 스탈린元帥도 여기에 同意하였다.」¹⁵⁾

알타會談에서 具體的으로 합의된 것은 對日參戰의 政治的條件에 關한 上記 元首들의 對話의 內容을 蔣總統의 合意를 얻는다는 件 제하에 해리만大使와 모로토프外相이 文書化하여 署名되었으며¹⁶⁾ 對日作戰과 關聯된 軍事協定은 알타會談에 關한 文書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太平洋地域에서의 美・蘇軍事協定에 關한 基本的인 情報를 交換하고 더 密接한 協調를 다짐한것 外에는 따로 軍事協定은 締結되지 않았다고 한다. ¹⁷⁾

이러한 알타會談의 內容 特히 日本과의 戰爭을 끝내는 方法으로서 蘇聯의 參戰에 關한 問題는 極東과 太平洋地域 司令官인 맥아더 (Macarthur) 將軍에게 報告되었으며 여기에 對한 맥將軍의 反應이 마샬 (Marshall) 將軍에게 報告되고 있는데,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政治적으로 蘇聯은 旅順을 不凍港으로 원할 것이라고 맥將軍은 말하였다. 그는 蘇聯은 軍事大國임으로 그러한 港口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다만 日本을 降服시키기 위해 실제로 피의 代價를 치름으로서 만이 그 權利가 妥當한 것이라고 하고 軍事的인 角度에서 본다면 美軍이 日本本土에 들어가기 前에 蘇聯을 對日戰에 參加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美軍이 日本軍의 主力을 말아 피해를 보는데 반해 蘇聯은 適當한 時期에 抵抗없는 地域에 進入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蘇聯이 滿洲에서 行動으로 나오기 전에 日本本土를 侵攻해서는 안된다고 強調하고 스탈린이 루즈벨트에게 약속한 獨逸敗亡後 3個月을 기다리지 말고 蘇聯의 行動이 始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蘇聯의 目的이 全滿州, 韓半島 그리고 아마도 華北의 一部를 얻는데 있다고 理解하고 있으며 이러한 領域의 掌握은 不可避할 것이나 그러나 美國이 당연히 主張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可能한 한 빠른 時日안에 滿州侵攻으로서 그 代價를 치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以上에서 보면 알타會談에서 美國은 對日終戰과 關聯하여 蘇聯에 의한 一定한 政治的 領土的取得은 不可避하다는 立場에서 蘇聯에게 이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蘇聯이 구체적으로 이 領土的取得을 어떻게 具體化할 것인가의 問題, 即 軍事作戰上的 合意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問題는 따로 美·蘇軍事首腦들에게 맡겨졌던 것이다.

C. 알타会谈後 美·蘇關係의 變化

알타会谈後 예상되었던 美·蘇의 對日戰爭에 있어서 協力は 잘 進行되지 않았다. 美國은 모스크바에 特別作戰參謀團을 派遣하였으나 蘇聯側 軍首腦와 接觸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具體적으로 沿海州地域이나 아물(Amur)江 地域의 視察조차 不可能하였다.

한편 東歐解放地域의 政權問題를 中心으로 美·蘇協調의 全体的인 무드에 금이가기 始作하였으며 따라서 太平洋地域에서도 蘇聯의 參戰의 重要性이 再考되는 狀況이 생기게 되었다.

1945年 4月 24日 統合參謀部는 太平洋戰略을 全面的으로 再檢討한 바 있는데 여기서 「日本の 無條件降服을 達成하기 위한 가장 切實한 戰略은 日本本土 島嶼를 侵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侵攻을 可能케 하는데 있어서 蘇聯의 參戰은 이미 必的의 아니 다」라고 하고 있다. 18)

그리고 이와 關聯하여 그 再檢討項目 16項에서 「蘇聯의 對日 參戰은 亞細亞大陸에서의 美軍의 早期作戰을 必要로 할 것인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 a. 亞細亞大陸과 日本本土間 日本軍의 移動을 차단할 能力에 비추어 蘇聯의 對日參戰과 거기에 따르는 關係軍의 封鎖는 必要치 않다」

「 b. 카이로宣言에서 滿洲가 中國에 返還되어야 한다고 한 事實과 이 宣言의 原則에 蘇聯이 아직 加入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萬一 露西亞가 參戰한다면 蘇聯軍이 먼저 滿洲에 進軍할 것이며 그렇게 되는 境況 적어도 名目上의 美軍事力이라도 中國에 進駐시킬 것인가의 問題를 提起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본다면 蘇聯軍의 參戰은 이제 도움을 준다기 보다 다른 政治的 問題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見解가 표명된 셈이다.

그러나 한편 蘇聯의 參戰은 早期終戰과 美國人의 人命被害減少에 도움이 되며 또 參戰与否와 그 결과는 美國이 願하건 願치않건 다분히 蘇聯의 獨自的인 決定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는 陸軍省의 見解가 表示되고 있는데 이것은 5月12日 美國務省長官著理 그루 (Joseph C. Grew) 가 蘇聯參戰의 政治的結果와 이 問題에 對한 英日協定の 關係에 關한 軍部の 見解를 물은데 對한 스티imson (Stimson) 長官의 回答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陸軍省은 蘇聯의 對日參戰은 蘇聯自身의 軍事的 政治的 基盤에서 결정될 것이며 美國이 어떠한 政治的行動을 取할 것인가에 별로 拘碍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陸軍의 見解는 蘇聯은 美國이 蘇聯參戰 條件으로 제시하는 어떠한 政治的 권유도 수락하겠지만 이러한 政治的 권유는 蘇聯이 언제 參戰할 것인가에 별 影響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蘇聯參戰은 對日戰을 短期化하고 美軍人의 人命被害를 줄이는 큰 効果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軍事的考慮가 蘇聯參戰以前에 極東에서 바람직한 政治的

目的에 對한 蘇聯의 合意를 얻으려는 努力을 排除하는 것은 없다.」

「 2. 極東問題에 있어서 알타에서 蘇聯에게 讓與된 것은 戰爭行爲에 미치지 못하는 美國의 軍事行爲로서는 막을 수 없는 蘇聯의 軍事의 範圍안에 있는 事項이다. 蘇聯은 日本軍을 敗北시키고 樺太 滿洲 韓半島 및 華北을 美軍이 이 地域을 占領할 수 있기 전에 軍事的으로 占領可能할 것이라고 陸軍省은 믿는다.」

「 以上에서 보면 美國이 軍事力을 使用하지 않는 한 極東에 關한 한 蘇聯에 軍事的인 結界는 加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軍事的인 見地에서는 極東에 關해 完全한 諒解와 合意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蘇聯이 日本本土의 軍事占領에 參與하는 問題는 政治的決定事項이다. 軍事的인 立場에서는 蘇聯의 참여는 占領目的을 達成하는 軍事的 要求物을 감소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다. 다른 한편 獨逸占領에서 蘇聯과의 經驗에서 본다면 美國軍隊에 의한 獨占的 占領이 賢明하다고 생각된다. 이 問題에 對한 討議는 蘇聯의 對日參戰 以前인 現 時点에서 必要치 않다.」

以上에서 보면 蘇聯의 對日參戰에 대한 評價에서 알타會談 當時와 差異가 있음을 發見한다. 이것은 歐洲에서 蘇聯의 占領政策에 對한 회의와 意見 및 利害對立이 노출되었으며 4月 親蘇的이었던 루즈벨트大統領의 死去等에서 유래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蘇聯이 일단 參戰하는 境遇 軍事行動의 性格上 蘇聯軍에

의한 일정 지역의 占領은 不可避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때 日本占領에는 蘇聯의 参与를 거부함이 賢明하다는 판단을 軍部内에서 하고 있음을 본다. 美国单独占領의 地域으로 日本本土 以外は 이 당시 考慮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蘇聯軍에 의한 滿洲 韓半島等の 占領이나 그 後에 올 政治的 考慮에서 이를 저지할 必要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美国에 의한 이 地域에서의 軍事作戰이 必要하였다. 軍事作戰을 蘇聯에게 맡겨놓는 한 蘇聯의 作戰地域에 對한 政治的發言權을 美国이 行使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었다는 것이 여기서도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고 하겠다.

D. 포즈담會談

1945年 5月 8日 独逸이 降服함으로서 戰後處理 蘇聯占領地域 및 蘇聯의 對日參戰問題等으로 美·英·蘇 列強은 또 다시 頂上會談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必要에서 杜魯門大統領의 特使로 홉킨스(H. Hopkins)가 모스크바에 派遣되어 스탈린과 5月下旬과 6月初旬에 걸쳐 協議하였는데 여기서 韓半島問題와 關聯된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스탈린은 日本의 實際的인 占領에 蘇聯이 参与하게 될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占領地域(Zones of occupation)에 關해 美·英과 合意하기를 願하고 있다.」

「알타에서 韓國의 地位에 關한 非公式論議가 있었는데 美国은

연구의 결과 韓國을 蘇聯 美國 中國 英國으로 構成된 信託統治를 實施함이 바람직하다는 結論을 내렸다. 期間은 未定이나 25年 또는 그 以下가 좋으나 5年 또는 10年은 되어야 하겠다고 하였다. 스탈린은 4個國에 의한 信託統治에 完全히 贊意를 表했다.」²⁰⁾

홉킨스特使와 스탈린間의 接觸의 결과 포즈담會談이 1945年 7月 15日頃으로 확정되자 美國國務省은 會談準備를 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그 結果 7月 4日字로 要領書 및 狀況判斷書等이 作成되었는데 그 題目은 「韓國過渡政府 및 蘇聯의 예상되는 態度」 또는 「戰後韓國政府」等으로 되어있다.

그 內容은 알타會談의 그것과 비슷하다. 단 蘇聯이 參戰하거나 않거나 간에 蘇聯의 參與는 바람직하다고 하고 또 蘇聯이 過渡政府의 管理에서 主導的인 役割을 하려 할 것인데 그러한 境遇 韓國을 國際聯合의 信託地域으로 指定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있는 點에서 差異가 있다고 하겠다. ²¹⁾

한편 美統合參謀部도 앞으로 있을 巨頭會談에 對備 對日作戰에 關한 計劃案을 마무리하였다. 即 6月 18日 大統領臨席下에 열린 軍首腦會議를 內容으로 하는 「對日戰爭의 基本軍事目標 戰略 및 政策」 題下의 一文件중 韓國의 政治的將來에 影響을 주는 部分은 다음과 같다.

「亞細亞大陸을 掃蕩함에 있어서 我側目的은 蘇聯으로 하여금 滿洲(그리고 必要하다면 韓半島)에 있는 日本軍을 담당하도록 하여

야하며 美國軍力과 얼마간의 補給의 支援으로 強化된 中國은 中國內의 日軍을 掃蕩하도록 해야한다.」²²⁾

이 軍首腦會議서는 釜山과 서울攻擊 九州攻擊 및 本州空襲等에 대해 作戰上 犧牲과 效果에 대한 討論이 있었는데 九州攻擊이 會議의 大勢를 이루었다.

그리고 킹 (King) 提督은 비록 蘇聯의 對日參戰이 有利하기는 하나 必須的이 아님으로 美國側이 이를 간청할 必要가 없다고 強調하고자 하였다. 日本을 敗北시키는데 犧牲은 컸겠지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이 事實의 認識은 포즈담會談에서 大統領의 立場을 強化될 것이라고 하였다. ²³⁾

여기서 보면 韓半島에 對한 作戰管轄은 蘇聯에게 맡겨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것보다 더 具體的인 政策指針文書로 보이는 것은 「蘇聯의 對日參戰關係」題下 「蘇聯軍事參戰의 形態」란 文件이다. 이 文件은 日字未評이나 上記 軍首腦會談後 作成된 것으로 추측된다. ²⁴⁾

이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作戰區域 (Operational zone)」

「(a) 日本島嶼」

「戰爭遂行 目的과 軍事政府를 위하여 中部太平洋 및 日本은 美國의 管轄下에 들어오도록 政策으로 決定하였다.」

「(b) 滿洲 蒙古 및 華北」

「韓半島를 除外한 亞細亞大陸의 日本軍에 對한 作戰은 일차적으

로 空軍의 支援을 받는 陸上戰이다. 이 型의 戰鬪에는 蘇聯軍 隊가 精通하며 또 잘 裝備되어 있다. 더욱 地理的 및 兵站的 理由에서도 이 地域에 있는 日本軍에 對한 作戰은 中國이 兵力을 이 地域에 導入하지 않는한 蘇聯軍에 의해 주로 수행될 것이다. 따라서 亞細亞大陸의 이 地域은 일차적으로 蘇聯의 作戰地域으로 고려된다. 다만 政治的 理由에서 對日戰爭에 參與한 다른 同盟國의 聯合國部隊가 參加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c. 韓半島 (Korea)」

「韓半島內 軍事作戰은 海岸上陸과 시베리아로 부터의 陸上侵攻을 混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그리고 政治的 理由로 해서 韓半島는 單一的인 聯合軍指揮下의 共同作戰區域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특히 日本에서 聯合軍指揮下의 混成部隊」

「中國 蘇聯 英國 및 美國은 國境을 연해 있거나 極東의 平和와 安全에 影響을 미치는 戰略的地位라는 이유에서 韓半島에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어떠한 나라도 어떤 한 나라가 韓半島에서 優勢한 地位를 얻는것을 座視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美·英·中 三國은 「韓國은 適當한 時期에 自由 및 獨立되어야 한다」는 原則에 公約하였으며 따라서 韓國에 自由와 獨立의 方向으로 發展하게 되는것을 阻害할 條件에 同意할 수 없다. 더욱 韓國人은 한때 被征服 奴隸化의 經驗을 당했기 때문에 他國의

意圖에 의심이 많으며 아마도 韓國內 어느 한 나라가 作戰을 하는 경우 敵意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理由로서 日本을 밀어내기 위해 利害關係國중 어느 한 나라에 의한 韓國侵入은 政治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軍事적으로 可能하다면 韓國에의 侵攻軍은 單一的인 統合軍指揮下에 利害關係國들의 部隊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⁵⁾

한편 이와 비슷한 時期에 된 日字未祥의 또 하나의 文書는 「카이로宣言에 대한 蘇聯의 支持」 題下에서 蘇聯이 韓國獨立에 關한 公約에 同意해야 한다고 하면서 蘇聯이 韓國에 『友好的』政府를 세울 기도를 할 것이라고 하고 그 結論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蘇聯의 카이로宣言에의 加盟은 極東 및 太平洋에서 美·蘇가 取할 行動方向에 關한 자세한 諒解에 의해 補完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諒解은 滿洲와 또는 中國全域에 그리고 韓半島에 『友好的』政府를 세우려는 蘇聯의 기도를 막는데 必要한 것으로 보인다.」²⁶⁾

알타協定에 따른 滿洲等 中·蘇間에 協議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모스크코를 訪問한 宋子文은 6月30日 스탈린을 만났는데 스탈린은 韓國을 4個國 信託統治下에 두는 것을 同意한다고 宋子文에 確言한 것으로 해리만大使가 伝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宋은 蘇聯이 시베리아에서 訓練한 2個의 韓國人部隊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蘇聯에서 訓練된 政治的人物들이 들어올 것임으로 4個國信託

統治가 이루어지더라도 蘇聯은 韓國事態를 支配하게 될 것을 우려하더라고 트루먼에게 報告되고 있다. 27)

비슷한 우려는 포즈담會談 前日인 7月16日 스티imson(Stimson) 陸軍長官의 文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要旨는 다음과 같다.

「韓國 信託統治 問題는 알타會談때 口頭로 討議되었으나 公式協定으로 되지는 않았다. 前大統領의 見解는 韓國人의 自治準備가 될때 까지 韓國에 國際信託統治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다고 알고 있다. 本官이 알기로는 스탈린은 外國軍이 韓國에 駐屯하는 일은 없는것이 좋다는 立場이다. 情報에 의하면 蘇聯은 이미 1, 2個 韓國人師團을 訓練시켰으며 이 戰力을 韓國에서 使用할 의도인것 같다. 만일 國際信託이 韓國에 設置되지 않는 境遇 혹은 設置되더라도 이 韓國人師團은 支配力을 發揮하여 獨立政府라기 보다 오히려 蘇聯支配下의 地方政府가 되는 政權樹立에 影響을 줄 것이다. 이것은 바로 極東에 옮겨놓은 폴란드問題이다. 本官의 提案은 信託統治의 強力한 推進에 있으며 信託期間중 美兵 또는 美海兵의 象徴적인 兵이라도 韓半島에 駐屯시킬 것을 提案한다.」 28)

美際 頂上會談에 있어서 蘇聯의 이러한 企圖를 의심케하는 發言 등이 있었으며 29) 美蘇軍事會談에서 蘇聯首席代表 안토노프(Antonov) 將軍은 蘇聯의 攻擧目的을 閔東軍의 擧破와 遼東半島의 占領이라고 천명하고 서로 軍事情報를 交換하고 作戰協力關係를 論하다가 「韓半島에 攻擧를 가하게 될 蘇聯兵力에 호응하여 對韓半島海岸作戰을 감행할 수 있는나의 與否」를 물었다. 여기에 대해 마샬將軍은

「陸海空 作戰은 아직 計劃된 바 없으며 또한 가까운 장래 없을 것이다」고 말하고 이어서 마살將軍은 蘇聯作戰에 있어서 韓半島의 重要性은 인식하나 韓半島攻擊의 可能性은 九州上陸後에 決定되어야 하며 韓半島는 九州에 設置될 飛行場으로 부터 空軍力으로 支配가 可能할 것이라고 하였다. 30)

이렇게 하여 美國은 韓半島에서 地上作戰은 計劃하지 않았고 결국 蘇聯이 單獨으로 하게 되었다. 31) 다만 그 地域의 區劃은 포즈담에서 이루어졌다는 記錄이 없고 다만 海空軍의 作戰地域은 7月24日 美·蘇軍事首腦들간의 會談에서 다음과 같이 合意되었다.

美國參謀首腦는 蘇聯參謀에게 5個項目의 提案 및 質疑를 書面으로 하였는데 第2項目에서 美國海軍의 海上 및 潛水艦의 作戰區域에 關해서 言及하여 「美海上戰力은 오호스크(Okhotsk)와 日本海에서 無制限作戰을 하고 潛水艦은 오호스크·日本 兩海面중에서 韓半島海岸은 北緯38度線 그리고 이어서 北緯40度 東經135度... 等 東南海面에서 無制限 作戰하기로 하고 그 西北地域은 蘇聯의 無制限作戰地域으로 하는데 대한 意見與否」를 물었다.

그리고 第3項目에서는 空軍의 作戰境界는 로파트카(Lopatka) 岬으로 부터 西쪽 北緯51度10分 東經147度地点, 다음 北緯45度45分 東經144度20分地点等이 說明되고 西쪽으로는 韓半島의 淸津 그리고 北向하여 韓半島國境의 鐵路, 그리고 鐵路를 따라 延吉 長春의 南滿洲 一帶와 華北以南地域에 대해 美國이 無制限作戰하는 問題等이 제기되었다. 33)

이러한 提議에 對해 蘇聯의 안토노프將軍은 日本에서의 美海軍의 無制限作戰 提議는 거부되고 咸北地方과 沿海洲近辺 一帶에서의 海軍作戰은 禁止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空軍作戰도 咸北의 대부분과 東滿一帶는 蘇聯空軍管轄에 들어 가는 것을 원했다. 33)

美·蘇論議의 결과 결국 蘇聯側의 提議대로 合意되었으며 이렇게 하여 東滿洲와 咸境北道地域에 대한 露西亞의 傳統的인 戰略觀念에 따른 要求를 許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美國側이 日本海海上 無制限作戰과 潛水艦作戰의 始點을 韓半島沿岸의 38 度에 두었다는 事實은 地上軍의 韓半島進入計劃을 결정하는 問題와 關聯하여 암시를 준다고 하겠다.

韓國의 信託統治問題는 頂上會談이나 外相會議에서 論議되었다는 記錄이 없는데 8月7日 會談後 作成된 美國側의 포즈담會談을 整理한 文書에 의하면 「蘇聯側이 韓國의 信託統治問題를 提起했으나 討議되지 않는 않았다」고 하고 있는 點으로 보아 伊太利前植民地의 信託統治에 蘇聯이 참여하려는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포즈담에서는 正식으로 討議되지 않았던 것 같다. 34)

그리고 이 당시 對蘇不信感은 점차 커졌으며 따라서 不可避해지는 蘇聯의 對日參戰의 경우를 생각한 作戰區域勘定에 급급했던 것 같다.

이러한 作戰地域區劃도 蘇聯의 對日參戰과 同時에 發効하는데 蘇聯軍의 參戰과 더불어 滿洲와 韓半島가 蘇聯의 占領下에 들어갈

事態와 關聯하여 트루먼은 賠償問題協議次 모스크에 가있는 폴리 (Pauley) 大使와 해리만 (Harriman) 大使로 부터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고 있다.

即 폴리大使는 「賠償問題와 其他事項을 協議하는 과정에서 結論은 우리軍隊가 韓半島와 滿洲의 南端에서 始作하여 北上하면서 可能한 많은 工業地帶를 占領하여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라고 하고 있고 해리만大使는 「포즈담에 있는 동안 마샬將軍과 킹提督이 말하기를 만일 蘇聯이 韓半島와 大連을 占領하기 前에 日本이 降服한다면 美軍의 이 地域에 對한 上陸을 하는 計劃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지금 스탈린이 宋子文에게 그의 要求를 증가시키고 있는 態度로 보아 關東半島와 韓半島에 있는 日本軍의 降服接受를 위해 美國軍의 上陸을 권한다. 蘇聯軍의 作戰을 위해 어느 地域을 尊重해야 할 義務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5)

以上에서 보면 海空軍作戰地域은 포즈담會談에서 確定하고 同時에 蘇聯參戰과 同時에 蘇聯軍의 韓半島作戰目標은 적어도 軍事的으로는 關東軍의 日本本土에의 차단에 있었겠으나 이미 東歐諸國에서 蘇聯軍占領地域에 政治的 經濟的問題가 提起되고 있었기 때문에 作戰은 蘇聯에게 맡기되 占領만은 信託統治의 確切的 實施를 위해서도 美國이 參與해야 한다는 立場을 取하였던것 같다.

上述한데서 보는데로 설혹 韓半島에서 地上作戰地域을 區劃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空海軍의 경우에는 現地 軍代表間 協議如何에 따라 調整이 可能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韓半島의 경우 4大

국에 의한 信託統治의 原則에 變化가 없었기 때문에 美國으로서
는 蘇聯에 의한 韓半島의 完全占領을 피하는 일방 海軍과 空軍의
排他的인 作戰地域안에 있는 서울以南의 韓半島占領 要求는 無理한
것이 아니었던것 같다.

以上 戰中 列強首腦들의 戰爭處理過程에서 韓半島에 對한 政策的
인 姿勢를 보았다. 여기에 對해 結論的인 言及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되겠다. 卽 戰爭이란 한 나라의 能力이 있는 그대로 發現
되고 또 그 戰略의 觀念이 가장 露骨的으로 表現되는 狀況이라
하겠다.

이러한 時期에 나타난 列強의 韓半島에 對한 立場을 보면 먼저
美國은 蘇聯의 太平洋地域으로의 進出을 막고 日本에 對한 美國의
排他的支配에 威脅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必要한 背後地域으로 생
각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음을 본다.

한편 蘇聯은 戰勝의 可能性이 確實해지자 日本의 無條件降服을
前提로하고 東北亞地域의 再編成에 関心を 가졌다. 이 點에서는
美國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蘇聯은 특히 帝政露西亞가 享有하던
權益을 회복하려 하였고 나아가서 可能하다면 確實한 不凍港을 얻
는데 있었다. 그 方法으로서 韓半島에 限해서 말한다면 信託統治
를 通해 美國과 對等한 지위를 確立하고 託治의 終結로서 美國의
亞細亞大陸으로 부터의 後退를 확보함으로서 그 目的은 達成될
수 있기를 바랬던것 같다.

中國은 韓半島를 文化的으로 歷史的으로 그들의 影響下에 유지할

수 있는 地域으로 간주하였고 이것이 信託統治에 中國이 참여함으로서 可能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戰爭終結 단계에서 戰爭에 기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可能性은 점차 감소되고 말았으며 따라서 美國의 적절한 政策만에 기대를 거는데 지나지 않았다.

3. 戰爭終結과 韓國政府樹立

A. 모스크코三相會議와 信託統治

北緯 38 度線 以南의 韓半島에 進駐해서 軍政을 펴고 있던 美軍當局은 信託統治에 反對하는 韓國民의 뜻을 華府에 전달하고 그들도 信託統治에 反對하는 見解를 傳達했으나 번스 (Byrnes) 美國務長官은 다가오는 모스크코會議에서 韓國의 統一과 獨立에 關한 적절한 保障을 蘇聯으로 부터 美國도 信託統治에 對한 支持의 立場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36)

歐洲와 極東에서 戰中 同盟國간의 諸問題를 調整하기 위하여 1945年 12月 16日 모스크코에서 三相 (美·英·蘇) 會議가 열렸는데 여기서 번스 (Byrnes) 美國務長官은 通貨 通商 交通 電信 電力配定 石炭運送等을 위해 行政을 統合하기 위하여 共同委員會를 創設할 것을 提案하고 5年間の 4 大國에 의한 信託統治를 提議하였다. 여기에 對해 모로토프 (Molotov) 蘇聯外相은 經濟統合 臨時政府 樹立 및 5年期限의 信託統治等 緊急한 問題를 다루기 위한 共同委員會를 設置하자고 提案하였는데 이 蘇聯案에 약간의 修正을 加해 合意를 보게되어 그 內容을 모스크코宣言에 포함되게 되었다. 37)

韓國問題에 關한 모스크코宣言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1. 獨立國家로서 韓國을 再建하기 위하여 民主的인 臨時政府를 創設하여 韓國의 産業 交通 및 農業의 發展 그리고 韓國人의 民

族文化發展을 위하여 모든 必要한 措置를 取하도록 한다.」

「 2. 臨時政府樹立을 돕기 위하여 南北韓의 美·蘇軍司令官 代表로서 構成되는 共同委員會를 創設한다. 共同委員會는 臨時政府樹立을 위한 여러 가지 提案을 함에 있어서 韓國의 民主的諸政黨과 社會團體와 協議한다. 共同委員會의 建議는 美·蘇政府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前에 美·英·蘇·中國政府에 전달, 意見을 듣는다.」

「 3. 韓國臨時政府와 民主的諸團體의 參與를 얻어서 共同委員會는 韓國人의 政治 經濟 社會的發展 民主的自治의 發展 그리고 民族的獨立을 달성하는 일을 도우고 지원(信託統治)하는 諸措置를 강구하는 것을 任務로 한다.」

「 共同委員會는 韓國臨時政府의 協議를 거쳐 美·蘇·英·中이 共同審議할 5年期限의 四大國 信託統治에 関한 協定成立을 위해 提議를 한다.」

「 4. 南北韓에 影響을 주는 緊急한 問題의 심의와 美·蘇司令官 間에 行政·經濟問題에서 항구적인 調整等을 樹立하기 위하여 美·蘇軍司令官 代表는 2週日內 會議를 연다.」³⁸⁾

韓國에 信託統治를 實施할 것을 決定한 모스크코宣言중에서 韓半島에 대한 美·蘇의 政治的 立場이 부각된 것은 그 第2項이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美·蘇는 共同委員會가 美·蘇의 現地軍司令官의 代表로 構成되며 共委의 建議는 美·蘇政府에 의하여 最終적으로 決定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立場은 美·蘇 어느 쪽도 韓半島에서 軍事的으로 不利한 狀態에 놓일 수 없다는 態度의 表明으로 보인다.

이러한 信託統治에 對해 모든 韓國人들은 直刻 獨立을 願하고 이에 反對하였음은 周知의 事實이고 共産黨等 左派는 1946年 1月 3日 이래 態度를 바꾸어 贊託으로 態度를 전환하였다. 39)

이러한 狀況에서 1946年 1月 16日 蘇聯軍代表 스티코프將軍 一行이 서울에서 美側과 兩地域의 當面한 問題를 協議하게 되었는데 이 때 美側은 38度線에서 分割占領狀態를 除去하고 占領地域統合을 제의한데 대하여 蘇聯代表는 이 問題를 討議할 權限을 갖고있지 않았다.

그리고 新聞의 全韓半島配布와 資本財 國外運搬禁止等の 討議는 反對했으며 統一的인 單一通貨制實施와 各種 商社의 分店設置 및 이 分店과 本店間의 交信許容等도 討議를 회피하고 南쪽의 쌀을 北으로 보내는 問題, 日本避難民수송, 北으로부터 電力供給問題만을 討議하고자 하였다.

스티코프 (Shtikov)와 핫지 (Hodge) 一行의 會議는 進전을 보지 못하고 1946年 2月 5日에 끝나고 말았다. 이 會議에서 分断占領을 해소시킨다는 政治的인 問題에의 托의는 進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여기서 表現된 蘇聯의 態度는 적어도 北韓半部만이라도 可能的한 한 長期占領하려는 態度였는데 특히 經濟的이나 政治的으로 韓半島全體를 單一化하는 指植에는 親蘇勢力이 得勢할 때까지

反對하며 따라서 北半部를 公開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明白해지게 되었다. 41)

1946年 1月 25日 蘇聯은 韓國問題에 關한 모스크코會談의 內容을 타스通信을 通해 報道했는데 여기에 의하면 美國側은 信託統治가 이루어 질때 까지 美·蘇 兩軍司令官이 長이되는 單一行政體制를 提案했고 여기에는 韓國人政府를 樹立하자는 案은 없었는데 蘇聯이 韓國人政府를 提議하여 이루어졌고 南北韓間에 關한 問題는 지금 서울에서 進行中인 美·蘇軍 代表會談에서 處理하도록 하고 民主的인 臨時韓國政府樹立과 같은 韓國人의 熱望하는 것은 蘇聯의 提案이었다고 하고 있다. 42)

이것은 서울과 南韓을 向한 宣傳이겠지만 이 蘇聯側 스스로의 發表에서도 明白한 바와 같이 韓半島를 어떠한 形式으로든지 單一的인 行政體制下에 둔다는 가장 重要한 問題는 모스크코三相會談에서 정하지 않고 討議의 權限도 부여하지 않은 現地 軍司令官에게 이를 미루고 말았으며 親蘇的인 政治勢力形成의 기회로 삼기위한 (民主的) 政治, 社會團體代表로 臨時政府樹立 云云의 句節을 넣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臨時政府樹立은 그것이 親蘇的인 것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 同意하고 不然이면 同意하지 않으면 되며 이 境遇 최소한 北半部에 對한 蘇聯의 支配는 確保되는 狀態가 維持된다고 생각한것 같다.

蘇聯의 韓半島에 對한 政策은 1946年 3月 20日 열린 美·蘇共

同委員 開會式에서 스티코프의 演說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卽 그는 「日帝支配의 잔재를 제거하고 國內서 反動 反民主的 分子에 대한 결정적 鬪爭을 벌리며 經濟生活의 再建을 위한 과격한 措置를 取하며 極東平和를 위해 싸우는」 그러한 政府를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蘇聯은 韓國이 진정으로 民主的이며 独立的이고 蘇聯에게 友好的인 나라가 되어 장차에도 韓國이 蘇聯을 攻擧하는 基地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예민한 関心을 가지고 있다.」⁴³⁾ 라고 하였다.

美·蘇共委의 全過程에서 蘇聯의 態度로 北쪽은 美國의 影響이 미치지 못하도록 公開하지 않으며 南쪽의 政治勢力이 蘇聯의 利益에 도움이 되는 方向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分斷의 現狀에 變更을 가져올 생각은 없다는 것으로 一貫되고 있었다.

蘇聯側은 信託統治에 反對하는 民族障營이 臨政樹立에 참여하는 것을 經統 反對했기 때문에 共委는 1946年 5月 6日에 끝나고 말았으며 1947年에 가서 잠깐 열렸으나 이것도 처음부터 성공할 可能性은 없었다.

스티코프가 1946年 5月 共委를 中斷하고 平壤으로 떠나면서 將軍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傳한다.

「蘇聯代表가 一定人士를 協議의 對象에서 除外하자고 主張하는 理由는 露西亞는 韓國의 가까운 이웃이다. 그러므로 蘇聯에 忠誠스러운(loyal) 民主的臨時政府를 세우는데 関心을 가지고 있다.

모스크로會議決定에 反對하고 蘇聯을 攻擊하는 사람들이 이 政府의 權限을 취게 되면 그 政府는 露西亞에 忠誠스럽지 않을 (Would not be loyal to) 것이고 그 政府官吏들은 反蘇的行動을 組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⁴⁴⁾

B. 유엔과 单独政府樹立

美·蘇共委의 失敗와 關聯하여 1947年1月 맥아더 (Macarthur) 將軍은 韓國問題에 對한 具體的인 措置를 取하지 않으면 美國이 韓國人들의 信任을 잃고 말겠다고 우려하고 따라서 다음 4個項의 建議을 한 바 있다.

一째 全体 韓國問題를 유엔에 依託

둘째 그리하여 現存 韓國問題를 再檢討하고 解決策을 建議할 韓國에 對해 利害關係가 없는 國家들을 包含하는 委員會의 創設을 美國政府가 要請할 것

셋째 모스크로協定第3章을 明白히 하고 韓國에 關해 實行可能한 方案을 發見하기 위해 美·英·中 및 蘇聯政府間 會議再開

넷째 獨立國家로서 政治 經濟的 單位로서 韓國의 發展을 저해하고 있는 모든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美·蘇代表間의 最高位會議開催

이러한 提案에 對해 당시 美國務省은 前三個項도 바람직스러우나

美·聯의 合意없이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하고 第4項은 美國政府가 이러한 提案을 하면 韓國에서 美國이 責任을 處理하는데 있어서 초조해 하고 있는 것으로 蘇聯이 오해하고 이를 利用하려 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다. 45)

1947年3月の 트루만·북트린의 發表에 이어 마샬프랜 (Marshall plan)의 實施等으로 東西冷戰이 심화되면서 그 해 여름과 가을에 걸쳐 美·蘇共委가 다시 열렸으나 진척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美國은 새로운 提案을 하게 되는데 예컨대 1947年8月26日 國務長官총리 라벳트 (Robert A. Lovett)의 모로토프 (Molotov)에 보낸 편지이다.

첫째로 美·蘇兩地域에서 早期 選舉를 實施해서 臨時 立法機關을 만든다.

둘째 이들 兩 立法機關은 兩地域의 人口比例에 따라서 全國的 臨時議會를 構成할 代表者를 選出한다. 이 議會가 서울에 모여 統一韓國을 위한 臨時政府를 만든다.

셋째 이렇게 해서 생긴 統一韓國을 위한 臨時政府는 韓國서 4 大國과 協議하여 모스크코協定에 따라 출 수 있는 獨立을 위한 經濟的 政治的 기반을 조성하는데 必要한 援助에 關係 결정한다.

넷째 以上の 諸段階에 유엔이 오브저버 (Observers)를 派遣케 하여 世界와 韓國人들에게 이러한 措置가 全적으로 代議的이며 獨立的인 것임을 확신케 한다.

다섯째 韓國臨時政府와 有關係強은 모든 外國軍隊가 韓國으로부터

撤収할 日字를 合意 決定한다.

여섯째 兩地域의 臨時立法機關은 각기 臨時的인 憲法을 起草하여 장차 全國臨時議會가 全韓國을 위한 憲法을 採択하는 기초를 삼게 한다.

일곱번째 統一 獨立韓國이 樹立될 때까지 兩地域內의 公私機關들은 유엔에 의하여 創設된 國際機關과 接觸케 하며 적절한 時期에 公的인 國際會議에 韓國人을 オブ저버로 參席케 한다. 46)

이 提案들은 兩地域에 各各 代表機關을 選出하고 거기서 全國的 機關을 위해 人口比例에 따른 代表를 選出토록하고 이로서 全國臨時政府를 構成케 하며 여기에 4大國과 유엔을 關여토록 하자는데 새로운 點이라 하겠다.

이러한 提案은 9月4日字의 모로토프(Molotov) 편지에 의하여 分斷을 심화할 뿐이라는 理由로 거부되고 있다. 47)

이어서 로벳트長官총리는 모로토프에게 1947年9月16日字의 편지에서 다가오는 유엔總회에 韓國問題를 提起하겠다고 하였다. 48)

1947年9月17日 유엔總회에서 마샬 美國務長官은 韓國問題를 유엔에 제기하게된 理由를 美·蘇間 모스크코協定을 실천에 옮기는데 失敗했기 때문에 다른 會員國의 公正한 判斷을 必要로 하며 美·蘇가 合意못하는 것이 韓國人의 獨立에 대한 緊急하고 正當한 要求를 지연시키는 正當한 理由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이무렵 서울에서 美·蘇共委는 형식적으로는 繼續되고 있었으며 共委의 蘇聯側代表중에는 서울 左翼人士와 接觸하고 있으며

南韓人口의 3分之1이 左傾 또는 그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情勢 報告가 있으며 유엔을 통한 조속한 解決策이 서울의 美國大使館에 의해 促求되고 있다. 49)

이러한 背景속에서 1947年 11月 14日 유엔總회는 「유엔韓半島臨時 委員會」(UNTCOK)을 創設하게 되었다. 이 委員會는 韓半島全域에 實施될 選舉를 감시하고 政府가 樹立되면 90日以内 外國軍의 完全撤收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45年 12月의 모스크코協定에 얽매어 2年間의 虛送歲月에 終止符를 찍을 수 있었고 美國도 모스크코協定에서 解放될 수 있었다.

결국 돌이켜 보면 美·蘇共委員에서 蘇聯은 첫째로 共委事業을 蘇聯의 主張(反託人士와 團體의 臨政참여 거부)에로 實踐에 옮기는 것, 둘째로 이것이 如意치 않는 경우 共委를 口實로 서울에 蘇聯人이 合法的으로 駐在하여 左翼과 接觸 이들을 指導하여 南韓에서 美軍政의 維持가 어려운 事態를 造成하여 결국 美國으로 하여금 아무런 措置를 取하지 못하고 美·蘇兩軍撤收을 수락케 하여 이미 北半部에 마련된 軍事力과 南韓의 左翼分子들과 聯合하여 所謂 獨立政府의 樹立과정에서 쉽게 親蘇政權을 全韓半島에 세우려고 한것 같다.

이러한 蘇聯의 態度는 1947年 9月 26日 美·蘇共委에서 蘇聯側에 의해 提議된 美·蘇兩軍의 同時撤收案이다. 이것은 10月 9日 모로토프에 의해 마샬將軍에 의하여 正式으로 提議되고 있다. 卽

美·蘇에 의한 外部로 부터의 도움이나 참여없이 韓國人 스스로가 그들의 政府를 樹立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美·蘇가 1948年初 軍隊를 同時에 撤収하자고 提議하였다. 50)

이러한 提議는 美國이 韓國問題를 유엔에 부탁하는 政策에 對항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 만일 그것이 實現된다면 韓半島 全體에서 絶對적으로 優勢한 그들의 立場이 實現化되기 때문에 蘇聯으로서는 主저없이 美·蘇兩軍의 撤収를 戒의할 수 있었다.

4. 休戰協定과 제네바會議

A. 休戰協定과 列強의 態度

休戰成立을 위한 최초의 努力은 1950年 12月 14日 유엔總會決議에서 休戰의 기반을 發見하기 위한 三人組의 構成을 決定하였는데 이 三人組는 유엔總會議長과 캐나다 (L.B. Pearson) 및 印度 (Benegal N. Rau) 代表로 構成되었으며 이들은 51年 1月 2日 「유엔總會 第1委員會에 對한 韓國休戰에 관한 三人組報告」를 提出하였다. 51)

여기서 그들은 대체로 38線 附近에서 休戰하고 非武裝地帶를 設置하고 포로를 交換할것 等を 提議하였다. 그리고 正月 11日에 는 「追加報告」(Supplementary Report)를 提出하였는데 여기서 休戰에 關한 「5個原則」을 제시하고 있다. 그 「5個原則」이란 다음과 같다.

- 첫째 새로운 攻擧를 위한 위장이 아닌 즉시 休戰을 추薦하고
- 둘째 休戰이 成立되면 平和回復을 위해 努力하며
- 셋째 統一 獨立 民主 主權國家를 세운다는 유엔總會 決議를 實踐에 옮기기 위해 모든 外國武裝軍은 撤収하며
- 넷째 前項의 各 단계가 完成될 때까지 韓半島의 行政과 이 地域의 平和와 安全을 위해 유엔의 原則에 따라 臨時協約을 만든다.

다섯째 休戰協定이 成立되면 유엔總會는 英國 美國 蘇聯 및 中共을 包含하는 適當한 機關을 創設하여 極東問題 特別히 台灣과 中共의 유엔代表權問題等を 包含하는 極東問題를 심의케 한다.」⁵²⁾

여기에 대해 美國과 中共은 각각 입장을 밝혔는데 美國務長官은 美國이 이를 支持하였는데 그 理由는 많은 유엔加盟國의 輿望을 저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나 美國은 中共이 유엔을 繼續 無視하지 않을 것이라던지 北京과의 接觸이 成功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美國은 韓國에 必要以上으로 軍隊를 長期 駐屯시킬 생각이 없다고 明白히 하였다. ⁵³⁾

한편 中共은 1951年1月17日 「五個原則」에 反對하고 다음과 같은 4個項目을 提案하였다.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韓國問題의 平和的解決은 모든 外國軍의 韓國으로 부터의 撤収와 韓國問題의 韓國人自身에 의한 解決이란 觀點에서 여러 有國國間 交涉에 의하여 休戰이 이루어져야 한다. 美國軍은 台灣으로 撤収해야 하고 中共이 유엔에서 合法的인 代表權을 행사해야 한다.」

「2. 中共의 參與없이 韓國과 極東에 關한 諸原則을 決定하였는데 그 中에서도 休戰을 먼저하고 有國國間 交涉은 뒤에 하자고 하는 것은 美國에게 그 侵略을 維持 擴大시키는 기회를 주며 진

정한 平和로 나아갈 수 없다.」

「3. 韓國問題와 其他 亞細亞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方案으로 다음과 같이 提案한다. 첫째로 韓國에서 休戰의 早期達成을 위하여 韓國으로 부터 모든 外國軍 撤収와 國內問題는 韓國人 스스로 해결한다는 合意의 기반위에 有關係國間 交渉을 實施한다. 둘째 交渉의 議題에는 美國軍의 台灣으로 부터 撤収를 包含한다. 셋째 이 交渉에 參與할 나라는 中共 蘇聯 英國 美國 仏蘭西 印度 埃及等 7個國이며 이 7個國會談가 열리는 것과 同時에 中共의 유엔에서의 正當한 地位는 回復되어야 한다. 넷째 7個國會談는 中共에서 연다.」

「4. 前項의 提案이 有關係國과 유엔에 의하여 合意되면 韓國交戰 狀態의 早期終結과 亞細亞問題의 平和的解決에 도움이 될 것이다.」⁵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中共은 당시 有利했던 戰勢를 背景으로 韓半島問題는 台灣問題도 美國軍을 撤収시킴으로서 一時에 해결하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韓國에서의 休戰보다도 中共의 유엔에서의 地位確保와 이를 통한 台灣問題 解決에 더 関心이 있는 것이 나타내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實際로 休戰은 中共軍의 攻勢가 더 效果가 없음이 明白해지고 交錯된 戰線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蘇聯이 參戰할 차례였던 狀態에서 蘇聯의 提案에 의하여 成立되었다. 마리크 (Jacob

Malik) 유엔代表는 1951年6月23日 休戰을 提案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休戰交渉이 進行되었다.

그런데 마리의크의 提議에 관한 蘇聯政府의 見解는 休戰交渉은 유엔軍司와 韓國軍代表와 北傀 및 中共軍代表間에 이루어져야 하고 政治的 領土的問題는 배제하고 純전히 軍事問題만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中共의 上記 見解와 差異가 있음을 본다. 特히 그로미코 (Andrei Gromyko) 外務次官이 이 問題에 대해 中共의 見解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고 함으로서 蘇聯의 休戰提議는 中共側과 면밀한 合意끝에 되었기 보다 戰線의 交錯狀態 打開策을 中共이 要求한데 대한 蘇聯의 對答으로 나왔을 可能性이 있는것 같다. 55)

休戰協定에서 列強의 韓半島에 대한 政治的態度에 關聯된 部分은 第4條60項에서 兩側軍司令官이 雙方 有國政府에 권하여 韓國으로부터 外軍撤収와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에 關한 高位政治會議을 열도록 한것 뿐이다. 이 條項은 共產側이 먼저 提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6)

B. 제네브會議

休戰協定 第4條에서 予定된 政治會議을 열기 위한 交渉은 板門店에서 잘 進行되지 않았다. 주된 理由는 共產側이 蘇聯과 印度를 中立國으로 참여시키자고 한데 있었다. 休戰協定은 雙方間의 會議이고 또 中立國은 어떤 協定에 도달하더라도 여기에 구속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엔側은 反對해 왔다.

그러다가 1954年 2月 18日 伯林에서 열렸던 4大国会議가 4月 26日에 제네브에서 韓圀問題를 다루기로 하였다. 參加國은 美· 仏· 英· 蘇聯 中共 韓圀 北韓 그리고 기타 韓圀戰爭參戰國으로서 會議參席을 希望하는 나라로 하였다. 57)

여기서 보는데로 蘇聯이 中立國으로 參戰하겠다는 即 韓圀戰爭엔 關係가 없다는 立場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會議에서 韓圀問題에 대한 各國의 態度는 대체로 유엔軍으로 參戰한 側과 共產側으로 大別해서 보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먼저 유엔側의 立場은 첫째로 韓圀에서 統一政府의 樹立은 眞正으로 自由選舉에 입각해야 하고 둘째 韓圀問題를 다루는 유엔의 權限과 權能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自由選舉에 關하여 韓圀側이 먼저 立場을 밝혀 南韓에서 유엔決議에 따라 選舉가 實施되었기 때문에 北韓에서만의 選舉를 主張하였다. 58) 그리고 델레스(Dalles)美國務長官 언커크(UNCURK)가 作業을 할 수 있는 태세에 있으며 北韓으로 부터 中共軍이 撤收함으로써 언커크가 못다한 業務를 北韓에서도 實施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主張하였다. 59)

이러한 北韓만의 選舉에 共產側이 反對하였는데 특히 周恩來는 델레스에 이어 「外部의 간섭없이」 全韓半島의 選舉를 主張하였는데 이 點 곧 後述하겠다. 全韓選舉는 共產側만이 아니라 蘇洲外相과 뉴질랜드外相等도 擁護하게 되어 결국 5月 22日 卞長官은

所謂 14個條項의 南北韓同時總選舉案을 提案하였다. 60)

이 새 提案의 골자는 6個月以内 유엔監視下에 南北韓 同時選舉를 實施하며 유엔軍은 秩序를 維持하고 언커크는 人口調査·選舉進行을 監視하며 中共軍은 選舉實施 1個月前에 撤收完了하고 유엔軍은 選舉가 끝나가 統一政府가 樹立되어 유엔에 의하여 이것이 證明된 以後에 撤收를 始作하며 또 유엔은 統一된 韓國의 領土保全과 獨立을 保障한다는 것이다.

聯合國側은 韓國政府가 南北韓同時選舉로 讓步한데 謝意를 表했다. 다음은 共產側의 立場이다.

共產側은 聯合國側이 主張하는 유엔監視下의 自由選舉의 原則을 가장 強力히 거부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들도 勿論 自由選舉, 人口比例에 따르는 代表, 選舉의 公正한 監視等 用語를 쓰고 있으나 基本的으로 그들은 유엔의 韓國問題에 대한 干여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아래에서 北傀·中共 및 蘇聯의 순으로 그들의 主張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① 南日의 提案(要約)

北傀外相 南日은 4月27日 演說에서 다음과 같은 提案을 하였다.

가) 全 韓國人의 自由意思表示에 기반을 둔 統一政府樹立을 위한 國會를 創設하는 總選舉를 實施할것.

나) 選舉와 南北韓間 經濟 文化的和合을 위한 緊急단 措置를

강구하기 위하여 全韓委員會를 構成하는데 그 構成은 南北各 議會에서 選出되며 南北韓에서 가장 큰 民主的社會團體의 代表도 包含한다.

다) 이 委員會는 上記 總選舉實施를 위한 選舉法을 起草한다.

라) 이 委員會는 南北韓間의 經濟 文化的 交流을 樹立 發展시키는 措置를 取할것.

마) 6個月內 모든 外國軍은 撤收할것.

바) 極東의 平和維持에 關心이 있는 모든 나라는 韓國의 平和的 發展을 保障하며 이로서 統一 獨立 民主國家로서 平和的인 方法으로 韓國을 統一하는데 도움이 되는 條件을 造成한다. 61)

여기에 대해 英國外相 이든(Eden)이 적절하게 평한 바와 같이 62) 選舉가 아니라 任命의 方法으로 이룩되는 全韓委員會에 큰 役割을 주고 있으며 이 全韓委員會는 人口의 比例를 무시하고 南北韓이 1對1의 關係에서 구성될 것을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態度는 오늘 날 行政區域으로서 道를 南韓과 같은 數로 区分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南韓보다 不利한 立場에 서지 않겠다는 意思의 表示라 하겠다.

② 周恩來의 演說과 提案

周恩來는 5月3日의 演說에서 그동안 美國의 極東政策을 非難하고 제네바會議가 열린것은 유엔이 韓國問題를 다룰 能力이 없

다는 것을 實証하고 있으며 「이번 會議은 유엔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強調하였다. 63)

周는 5月22日에는 南日의 提案에 1個項을 追加하여 다음과 같이 提案하였다. 即 「全韓委員會가 全韓選舉法에 따라서 그리고 外部의 간섭없이 實施할 南北韓 總選舉를 支援하기 위하여 中立國 監視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 64) 고 提議하여 總選舉 과정에서 유엔의 干渉 可能性을 排除하려는 努力을 본다.

그리고 6月15日 마지막 날에 가서 周恩來는 제네브會議에 參加한 國家는 統一 民主韓國을 樹立한다는 基礎하에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에 關하여 合意에 到達하기 위한 努力을 繼續하자고 提議하고 適當한 交渉의 再開를 위한 時間과 場所의 問題는 當事國間 交渉을 通하여 別途로 決定토록 하자고 提議하였다. 65)

이러한 周의 態度는 유엔이 韓國問題를 다룰 權能이 없다는 것과 제네브會議은 유엔과 相關이 없다는 것을 強調하고 또 제네브會議의 再開에 있어서 時間과 場所問題만을 거론하는 것은 「이 會議로 하여금 繼續 韓國問題를 다루게 함으로서 中共이 韓國問題의 處理에 있어 干渉權을 繼續 維持하려 하는 것이라고 解狀된다.

여기에 대해 스미스(Walter B. Smith) 美國務次官은 제네브會議은 상설적인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66)

③ 모로토프의 演說과 提案

모로토프는 여러 代表들의 見解를 整理하면서 韓國의 平和的 發展은 極東에 있어서 國際平和에 密接한 關係를 가진 國家들이

正當한 義務을 지는 境遇 이룩될 수 있다고 하고 「韓國問題의 平和的解決과 關聯하여 제네브會議 參加者들은 다음과 같은 基本原則에 合意한다.」라는 提案을 하였다.

ㄱ) 韓國의 統一 獨立 民主政府를 樹立하기 위해 全韓領土에서 選舉를 實施한다. 全韓議會의 代表는 全体人口의 比例에 따라야 한다.

ㄴ) 選舉를 準備 實施하기 위하여 그리고 南北韓間의 和解를 돕기 위해 南北韓 代表로서 全韓委員會를 構成한다. 이 委員會의 構成과 任務는 장차 심의의 對象으로 한다.

ㄷ) 모든 外國軍隊는 일정 期間內에 撤収한다. 全韓 自由選舉 實施以前에 南·北韓으로 부터의 모든 外國軍隊 撤収의 期限과 단계는 앞으로의 審議對象으로 한다.

ㄹ) 選舉의 監視를 위한 國際監視委員會를 創設하며 그 構成은 장차의 심의 對象으로 한다.

ㅁ) 極東平和에 가장 關心이 있는 나라들이 韓國의 平和的發展에 對한 義務을 지는데 어느 나라가 이 義務을 질것인가는 장차의 심의 對象으로 한다.

이러한 蘇聯의 提案은 우선 合意可能한 것만 整理해서 合意하고 그렇지 못한것은 「장차의 심의대상」으로 한다고 미룸으로서 일견 合理的인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가 되는것은 實質的으로 타결되어야 할 重要問題들은 모두 이 「장차의 심의대상」속 에 들어 있다. 이렇게 되면 「全韓議會의 代表는 人口比例에 따

른다」고만 해 놓고 그 외 이를 實施할 方法은 모두 「장차의
심의대상」에 包含시킴으로서 實際로 合意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남는 것은 일체의 韓國問題 處理에서 유엔의 權威와 權能은 剝奪
당하는 것이된다. 결국 蘇聯의 당시 目的은 韓國을 위해 取한
유엔의 諸決定의 効力에 終止符를 찍는데 있었다고. 하겠다.

돌이켜 보면 蘇聯의 「人口比例에 따른 代表」란 原則만이라도
받아 두었더라면 先例의 하나로 장차 利用될 기회가 있을지 모른
다.

끝으로 제네브會談가 1953年 8月 28日 유엔總會決議에 의한 것이
나 休戰協定 第4條 60項에 따른 것이냐의 問題는 筆者의 다른 論
문을 參照하기 바란다. 67)

5. 유엔에 있어서 韓國問題

유엔에 있어서 韓國問題는 1947年 韓半島問題중 유엔에서 다루기 始作한 以來 유엔의 諸措置의 効力과 正当性을 지키려는 우리의 努力과 이것을 깨트리려는 共産側의 努力이라는 두가지 側面에서 관찰하는 것이 便利할 것이다.

이러한 境遇에도 韓半島에 對한 基本的인 政策은 지속된다는 原則에서 이 問題를 다룬다.

A. 韓國側의 유엔政策

韓國과 유엔과의 關係는 韓國을 위하여 創設되었던 유엔機構의 性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1947年 11月 14日 유엔 韓國臨時委員會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은 韓國의 政府樹立을 도왔으며 이것도 1948年 12月 12日 유엔 韓國委員會 (U.N. Commission on Korea) 에 의하여 代置되었고 유엔은 유엔 韓國委員會의 活動이 可能했던 地域에 있어서 唯一合法政府로서 大韓民國政府를 承認하였다.

韓國戰爭에 對한 유엔의 対応은 이 유엔 韓國委員會의 報告에 따른 것이었고 이 委員會는 1950年 10月 8日 유엔 韓國統一復興委員會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에 의하여 代置되었다.

언커크(UNCURK)를 創設하는 決議案의 特色은 유엔軍의 38度 線越境을 合法化하는 것으로서 유엔의 韓國에서의 活動目標가 韓國의 統一 獨立 民主政府를 세우는데 있다고 함으로서 戰勝의 結果를 政治적으로 확인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中共軍의 介入으로 成功하지 못하였으며 休戰協定의 成立으로 다시 分斷의 原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休戰協定 成立後 60年代末에 이르기까지 유엔의 韓國問題討議는 韓國代表의 单独招請에 의한 언커크報告書 採択과 統韓決議案 卽 유엔監視下 人口比例에 따른 總選舉로서 統一政府를 樹立한다는 것을 반복 決議해 왔다.

그 동안 韓國은 유엔에 单独加入을 시도하였고 그 때마다 蘇聯의 拒否權行使 또는 南北韓同時加入案 提出等으로 맞서게 되었다.

北韓은 1949年 2月 9日과 1952年 1月 5日 各各 单独加入을 申請하였으며 한편 蘇聯은 1957年 1月과 1958年 12月에 南北韓同時加入案을 提出하였다. 이들이 모두 否決되었음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유엔에서 韓半島問題가 새로운 角度에서 論議되기 始作하는 것은 1971年 11月 中共의 유엔加入과 美·中共關係의 變化를 背景해서 이다. 이러한 國際政治의 背景에서 南北對話가 이루어졌고 드디어 1973年 6月 23日 韓國政府가 南北韓의 유엔加入을 받아들이는 「6.23 外交政策宣言」을 냄으로서 韓國問題가 유엔에서 冷戰의 遺留로서의 탈을 벗게 되었다.

여기에 따라서 1973년의 유엔에서는 언커크해체와 남북對話 繼續을 促求하는 Consensus statement를 採択하게 되었다. 언커크해체는 유엔에 의한 韓國統一方案을 公式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韓半島問題는 다시 韓國戰爭勃發 以前의 狀態로 되돌아간 셈이었다.

이러한 狀態에서 韓國側은 南北韓 平和統一의 政策에 따른 南北韓關係의 制度的安定을 기하는 方案을 提呈하게 되었다. 이것이 1975年 6月 27日 6個國共同提案으로 提出된 決議案이며 이것은 9월에 가서 仏國西側 修正案으로 通過되었으나 우리側 原案의 內容이 政策的인 立場을 밝힌 더 重要한 것이라 하겠다. 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即 他方直接關係 當事者들이 유엔軍司令部終了에 앞서 休戰協定の 모든 規定이 앞으로 繼續 有効하다고 看做하는데 同意한다면 1976年 1月 1日字로 유엔軍司令部를 終了하고 現在 유엔軍司令官의 責任으로 되어있는 모든 休戰協定 規定의 履行을 保障할 後繼 司令官으로서 美國軍 및 韓國軍 將校를 任命하도록 하는 方向으로 安保理가 關係當事者들이 最短時日內 協議를 하도록 勸告해 달라는 것이었다.

요컨대 休戰協定の 當事者들 南北韓 및 美·中共으로 現實化시키고 平和와 統一의 問題는 南北間의 對話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유엔總회가 열려 韓國問題의 심의단계에서 유엔軍司令部 解體의 問題는 유엔安保理의 決議事項이라는 立場에 따른 我側決議案의 直

線的 表現을 줄인 仏蘭西修正案이 통과되었다.

이를 前後하여 美國側은 1974年 3月 25日 北傀가 美國과 直接 平和條約을 締結하겠다고 直接協商을 要求하고 나온데 對한 反應으로서 休戰當事者 會議을 提議하게 되었다. 即 키신저 美國務長官은 75年 9月 22日 第30次 유엔總會에서 그리고 76年 7月 22日 다시 南北韓과 美·中共間의 4者會談을 提議하여 「韓半島의 休戰 維持를 爲해 休戰協定에 代하는 보다 永統的인 法的構造를 만들어 亞細亞의 緊張을 완화하자」고 하여 南北韓關係를 보다 확실한 國際法的으로 安定된 狀態로 定着시키려 한 것으로 解釋된다.

以上에서 보는데로 韓國을 中心으로 하는 西方側은 南北韓間 關係正常化의 先行이 韓半島問題解決의 始發點이라는 意見을 같이하고 있다.

B. 共産側의 유엔政策

北傀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대로 1948年以來 100餘次에 걸쳐 南北韓關係에 關한 提案을 해 왔는데⁶⁸⁾ 그 중에서도 74年 3月 25日 北傀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3次會議의 허담報告에서 나타난 對美 直接 平和條約 協商提議가 第29次 유엔總會 北韓側提案으로 나타난 것에 그들의 유엔에서의 積極的 자세 표명의 代表的인 것이 라 하겠다.

共産側은 종래 韓國問題에 대한 유엔의 干与를 유엔憲章 107 條에 違反이라느니 언커크에 이르기까지의 유엔機構와 活動이 不法的이라고 해 왔으나 外軍撤収等은 유엔이 積極 干与 이를 實現시켜야 한다는 立場을 取하면서 第 29 次 유엔總會에서 유엔旗下의 모든 外軍撤収와 이를 위해 直接 当事者가 적절한 措置를 取하자고 提議하였다.

그리고 第 30 次 유엔總會에서는 北傀는 「韓國에서 休戰을 恒久的平和로 轉換하고 韓國의 獨立과 平和的再統一을 促進하는데 有利的한 條件의 造成」이라는 題下의 提議를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北傀와 美國만이 唯一合法政府라는 提議를 해 왔다.

이어서 第 31 次 유엔總會에서는 「韓國에서 戰爭危機의 除去 平和의 維持와 強化 및 韓國의 獨立과 平和統一의 促進」이란 提下의 決議案을 提出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新型 및 核武器의 除去 · 두개의 韓國 · 反對 大民族會議召集 유엔軍司解体와 外軍撤収 平和 協定締結等을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 案이 一方的으로 通過될 展望이 보이지 않자 이를 1976年 9月 21日 철회하고 말았다.

이를 철회하는 聲明書에서 北傀는 第 30 次 유엔總會의 決議內容 即 休戰協定の 實際的當事者로서 美·北傀間에 直接平和條約을 締結하자 北傀側 決議案의 早速한 履行을 要求하였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北傀의 유엔에 對한 政策은 처음에는 韓國問題에 대한 유엔의 干与反對 두번째는 北傀의 유엔參與要求 셋째는 韓國問題에 대한 유엔措置의 無効力等으로 区分된다.

6. 所謂 三者會談說을 前後한 列強의 韓半島 政策

所謂 三者會談의 背景은 北傀가 美國과 直接 平和協商을 하자는데 있었다. 北傀는 1978年 3月 티토大統領의 訪美와 초세스쿠大統領의 訪美를 기회로 對美 直接協商을 提議하였는데 이 三者會談云云은 티토가 카터大統領을 만나고 난 뒤였다고 생각된다.

이 三者會談은 南北韓의 接觸을 전제로 하는 美國의 立場이 충족되고 있으며 從前의 4者會談이 蘇聯을 排除하고 北傀가 中共과 더불어 對美協商을 하게되는 어려움을 제거해 준다는 뜻에서 三者會談은 4者會談보다 北傀에게 유리하고 또 中·蘇의 立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또 北傀의 自主性云云을 고양시켜 주는 効果도 있다.

그러나 三者會談은 基本的으로 南北韓間의 接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北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예컨대 1977年 9月 뉴욕에서 열린 非同盟外相會議에 北傀의 허담이 「美·北傀間 協商을 始作하고 그 協商테이블에서 韓國의 參與를 論議할 수 있다」고 한 데서 그들이 韓國을 參與시키되 그들과 同等한 立場에서의 參與는 안되겠다는 態度임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 三者會談說이 美國의 카터政府가 北傀에 대한 敵對政策포기의 路線이⁶⁹⁾ 밝혀진 뒤라는 면도 注目할 必要가 있다.

中共이나 蘇聯의 三者會談에 대한 立場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韓半島의 現狀維持에 関心이 있는 것같은 징후는 없지 않다.

中共의 경우 1971年 여름 周恩來가 뉴욕 타임즈記者에게 南北韓 間 和解 云云한 것⁷⁰⁾으로 伝해지고 있으며 1975年 5月 20日 衛冠華의 天津에서의 秘密講和에서 反帝만하고 反修는 하지 않으면 積極 支援하기 어렵다는 立場을 밝혔는데 여기서도 北傀가 鴨綠江 까지 밀렸을때 支援하게 될 境遇에 言及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1975年 4月 越南共産化를 보고 北京을 訪問하여 支援을 要求한 것을 거부한 뒤 中共의 對北傀政策 表明으로서 重要한 것으로 看做된다.

그러나 中共은 北傀의 對南戰略을 全적으로 支持하고 있으며 第 30次 유엔總회에 이르기 까지 中共의 유엔에서의 北傀支持는 큰 것이었다.

그리고 1975年 10月 지금의 밴스 (Vance) 美國務長官이 野人으로서 鄧小平을 만났을 때 「 韓國問題는 民族獨立의 問題이다 」 (This is an issue of national independence) 라고 했다고 伝한다. ⁷¹⁾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경우 「 獨立 」이란 美國으로 부터의 獨立이며 결국 北傀가 韓半島의 主人이 되어야 한다는 北傀의 立場에 同調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中共의 이러한 立場은 北傀가 姿勢를 變更, 우리의 共存 路線으로 나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은 勿論이다.

1978年 5月 華國鋒의 北傀訪問에서 兩者間 共同聲明을 發表하지

못하였는데 그 理由는 中共의 經濟援助가 不充分하였던지 北傀의 第2次7個年 計劃을 위해서는 南北韓間 關係正常化가 병행되는 것이 有利하다는 意見이 伝해졌고 北傀가 아직 이를 받아들일 立場에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음 蘇聯의 境遇를 본다.

蘇聯의 對外政策에 있어서 所謂 「亞細亞集團安保」云云이 아직 有効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아직 有効하다면 蘇聯이 南北韓間의 分断이 第二次大戰後 생긴 政治的現狀이란 사실을 잊어 버리지 않았다면 韓半島 平和定着에 関心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1974年 12月 4日 마르크大使가 유엔總會 演說에서 北傀가 美國에게 平和條約을 提議하고 南北調節委員會에서도 平和條約을 提議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것이 亞細亞集團安保와 韓國問題解決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72)

그리고 1975年 4月以後 金日成의 訪蘇를 사실상 受諾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리고 1976年 8月 「미루나무事件」의 境遇에도 北傀의 立場을 支持하지 않았으며 1976年 8月の 非同盟頂上會議에서도 蘇聯은 會議 그 자체는 크게 取扱하였으나 北傀側 決議案은 別로 取扱하지 않았다. 그리고 1977年 1月下旬 北傀首相 朴成哲을 맞아 「코쉬긴」은 韓半島의 긴장완화를 云誦하였고 北傀가 朴成哲의 訪蘇와 때를 맞추어 1月 25日 南北政治協商會議를 提案하였던 事實에서 蘇聯이 南北韓의 平和定着에 関心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韓半島의 現狀維持에 関心이 있는 것같은 징후는 없지 않다.

中共의 경우 1971年 여름 周息來가 뉴욕 타임즈記者에게 南北韓 間 和解 云云한 것⁷⁰⁾으로 伝해지고 있으며 1975年 5月 20日 喬冠華의 天津에서의 秘密講和에서 反帝만하고 反修는 하지 않으면 積極 支援하기 어렵다는 立場을 밝혔는데 여기서도 北傀가 鴨綠江까지 밀렸을때 支援하게 될 境遇에 言及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1975年 4月 越南共産化를 보고 北京을 訪問하여 支援을 要求한 것을 거부한 뒤 中共의 對北傀政策 表明으로서 重要的 것으로 看做된다.

그러나 中共은 北傀의 對南戰略을 전적으로 支持하고 있으며 第 30次 유엔總회에 이르기 까지 中共의 유엔에서의 北傀支持는 큰 것이었다.

그리고 1975年 10月 지금의 밴스 (Vance) 美國務長官이 野人으로서 鄧小平을 만났을 때 「 韓國問題는 民族獨立의 問題이다 」 (This is an issue of national independence) 라고 했다고 伝한다. ⁷¹⁾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경우 「 獨立 」이란 美國으로 부터의 獨立이며 결국 北傀가 韓半島의 主人이 되어야 한다는 北傀의 立場에 同調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中共의 이러한 立場은 北傀가 姿勢를 變更, 우리의 共存 路線으로 나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은 勿論이다.

1978年 5月 華國鋒의 北傀訪問에서 兩者間 共同聲明을 發表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中共의 經濟援助가 不充分하였던지 北傀의 第2次7個年 計劃을 위해서는 南北韓間 關係正常化가 병행되는 것이 有利하다는 意見이 伝해졌고 北傀가 아직 이를 받아들일 立場에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음 蘇聯의 境遇를 본다.

蘇聯의 對外政策에 있어서 所謂 「亞細亞集團安保」云云이 아직 有効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아직 有効하다면 蘇聯이 南北韓間의 分斷이 第二次大戰後 생긴 政治的現狀이란 사실을 잊어 버리지 않았다면 韓半島 平和定着에 関心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1974年 12月 4日 마르크大使가 유엔總會 演說에서 北傀가 美國에게 平和條約을 提議하고 南北調節委員會에서도 平和條約을 提議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것이 亞細亞集團安保와 韓國問題解決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72)

그리고 1975年 4月以後 金日成의 訪蘇를 사실상 受諾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리고 1976年 8月 「미루나무事件」의 境遇에도 北傀의 立場을 支持하지 않았으며 1976年 8月의 非同盟頂上會議에서도 蘇聯은 會議 그 자체는 크게 取扱하였으나 北傀側 決議案은 別로 取扱하지 않았다. 그리고 1977年 1月下旬 北傀首相 朴成哲을 맞아 「코쉬긴」은 韓半島의 긴장완화를 云語하였고 北傀가 朴成哲의 訪蘇와 때를 맞추어 1月 25日 南北政治協商會議를 提案하였던 事實에서 蘇聯이 南北韓의 平和定着에 関心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以上에서 보면 三者會談 方式은 北傀가 非現實的인 對南戰略을 포기하고 南北間 共存의 路線으로 方向轉換을 하고 美國을 위시한 西方側의 資本과 技術에 접하게 되는 方法으로 제시되었으며 이것은 美國에 의한 對北傀宥和政策에도 同時에 內包되고 있다고 하겠다.

7. 結 論

以上에서 보면 韓半島問題의 性格은 韓半島가 分斷되던 당시의 그것에서 크게 變換한 것이 없다고 하겠다. 다만 韓國戰爭을 기해 北半部에 對한 蘇聯의 影響力은 크게 줄었으며 中共과 蘇聯이 北半部에 對해 影響力 競爭을 하게 됨으로서 事態가 복잡해 졌다는 점은 큰 變化라 하겠다.

한편 韓國과 日本과의 關係成立은 50년까지 韓國에 대해 日本의 存在가 無었던 點도 北의 境遇에 比할 정도는 아니나 變化임에 틀림없겠다.

그러나 日本의 影響은 軍事的으로 볼때 아직 無의 狀態이며 徹底히 美國의 影響下에 있기 때문에 對立의 狀態에 있는 中·蘇와 比할 바 아니라고 하겠다.

이러한 狀態를 前提로 하고 보더라도 美·蘇·中共等 列強은 韓半島에서 平和定着이 亞細亞平和에 기여하고 美·蘇의 태탕트나 美·中共의 關係改善에 기여한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다만 中·蘇의 對立으로 中·蘇가 모두 北傀에게 列強間에 긴장완화의 路線으로 積極 나오도록 壓力을 가하지 못하는 狀態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最近 日本과 中共이 1978年 2月 通商協定을 締結하고 蘇聯의 反對를 무릅쓰고 講和의 方向으로 나아가고 蘇聯의 反日的 態度가 明白해 지므로서 美·日·中共의 反蘇國際統一戰線이 형성되

는 것과 같은 狀況은 北傀의 立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狀態에서 蘇聯이 北傀에 보다 積極的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있는것 같다. 그러나 北傀가 蘇聯에 접근함으로써 中共과 美國으로 부터 敵意를 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北傀가 결국 南北韓間 平和定着의 路線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勿論 그러한 境遇에도 政治路線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脚 註

- 註 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The Confer-
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U.S. Government Pr-
inting Office Washington : 1961), PP.448-449. 앞으
로는 Cairo and Tehran 으로 略記함.
- 2) Cairo and Tehran, P.257.
- 3) Cairo and Tehran, P.325. 이 대목은 會談相對國이었던
中國側의 記錄을 이 文書에서 실고 있는데 그 理由는 美
國側은 이 대목에 대한 記錄이 없기 때문이라 한다. 同
書 P.322.
- 4) Cairo and Tehran, P.334.
- 5) 同前 P.376.
- 6) 同前 P.389.
- 7) 同前 P.566.
- 8) 同前 P.567.
- 9) 이 見解는 李用熙 「三八線劃定新攷 - 蘇聯對日參戰史에 沿하
여 - 」 亞細亞字報 第一輯.
- 10) Cairo and Tehran, P.869.
- 11) 李用熙 同前論文, P.423.
- 1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The Confe-
rences at Malta and Yalta, 1945. (U.S. Government

-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55), 以下 Yalta 로 略記
- 13) 同前, PP.358-361.
- 14) 同前, PP.768-769.
- 15) 同前, P.770
- 16) 同前, PP.896-897.
- 17) The Entry of the Soviet Union into the war Against Japan : The Military Plans, 1941 ~ 1945, (The Ministry of Defense 1955), PP.47-50. 앞으로 Entry 로 표시.
- 18) Entry, P.61.
- 19) 同前, P.67.
- 2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The Conference of Berlin, 1945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60), P.47. 以下 Potsdam 의 略記 그리고 Entry, 72-74.
- 21) Potsdam, PP.311-315.
- 22) Potsdam, P.905. 5月18日 軍首腦會議內容은 PP.903-910.
- 23) 同前, P.910.
- 24) 1945年7月5日字로된 國防省作成 * The Chinese Communist Movements * 란 文書에서도 이 文書와 같이 滿洲 蒙古 및 華北의 作戰이 蘇聯에 의해 수행될 것이 不可避하다는 見解를 펴고 있는 點에서 本文書와 유사하다.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Hearings Before the Subcommittee

To Investigate the Administration of the Internal Security at and other Internal Security Laws of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U.S. Senate, 82nd congress, 1st Session, pt. 7A, PP. 2308-2310.

25) 同前, PP. 924-926.

26) 同前, PP. 297. 여기서 「友好的」인 親蘇 또는 蘇聯衛星이란 뜻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27) H.S. Truman, Memories, vol. 1, PP. 315-317.

28) 同前, vol II, P. 631.

29) 同前, PP. 253, 260, 281-282. 特히 P. 260 footnote no. 51.

30) 同前, PP. 345-348.

31) 同前, Background Information on Korea, House Report No. 2495,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1950R, 2-3. 特히 Testimony of T.S. Timbgman.

Roy Appleman, U.S. Army in the Korean War, 1965, PP. 2-3.

32) Potsdam II, PP. 1327-1328, Entry, PP. 92-94.

33) Potsdam II, PP. 410-415, Entry, PP. 95-99.

34) Potsdam, P. 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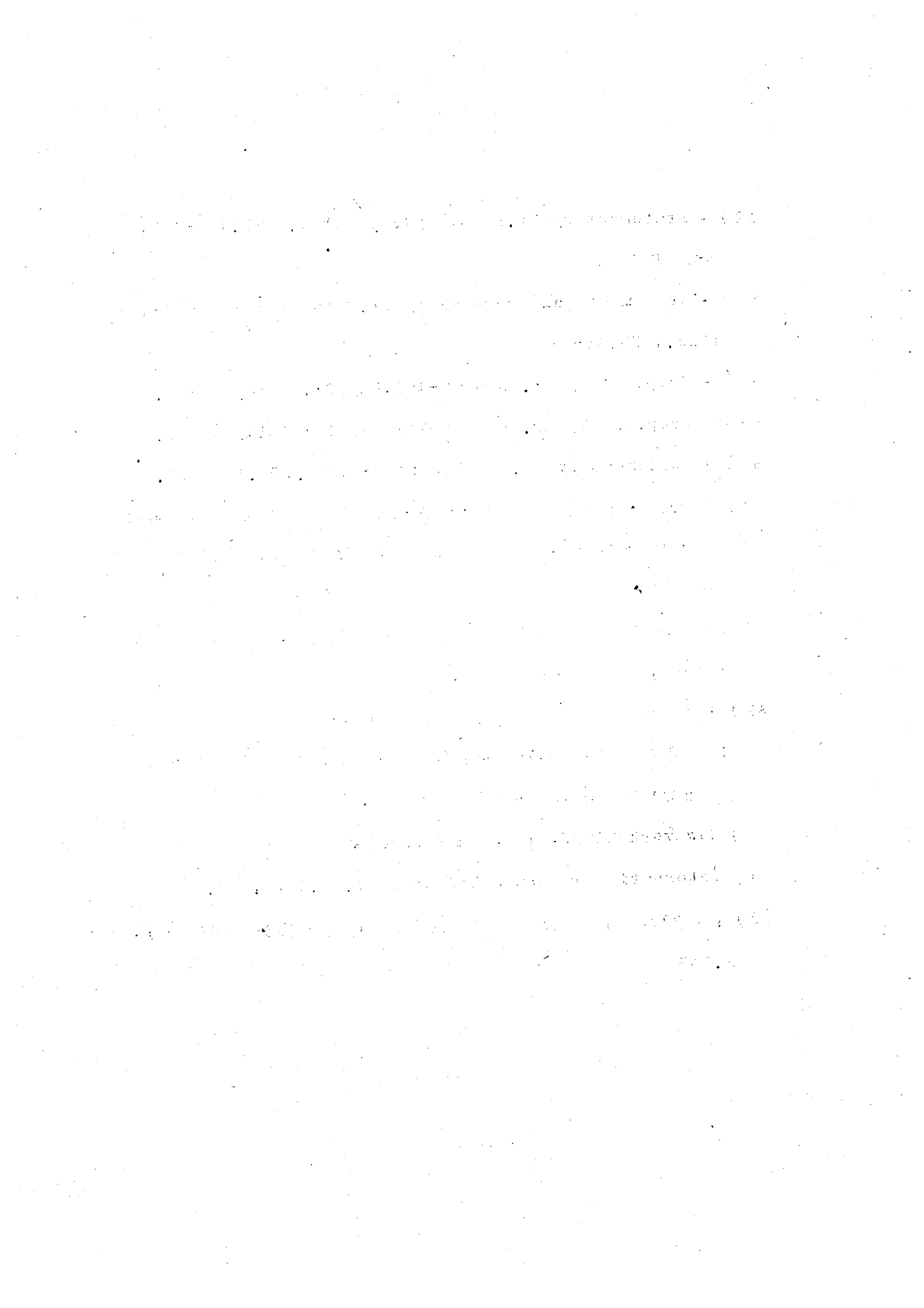
35) Memoirs by Harry S. Truman vol. 1, year of Decisions (Doubleday, New York, 1955), PP. 433-434.

36) 1945年 11月 29日 벤스長官의 回答 - History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USAFIK), XXIV Corps Historical Section, n.d., Part II, Chapter 4, P. 62.

- 37) James F. Byrner, *Speaking Frankly* (New York Harpers & Brothers, 1947), PP. 221-222.
- 38) Foreign Relations of the U.S., 1945, vol. VI. (U.S.GPO, Washington, 1969), PP. 1150-51.
- 39) 美 第 24 軍團은 1946 年 1 月 3 日자로된 北韓共產黨으로 부터의 委託指令 • Instructions to All Levels and Branches Concerning the Decisions on Korean Problems Made by the Three Power Conference at Moscow • 를 入手하였다.
Carl Berger, *The Korea Knot* (Philadelphia, Univ. of Penn. Press, 1957), P. 61, Footnote.
- 40) Foreign Relations of the U.S., 1946, vol. VIII, The Far East (USGPO, 1971), PP. 611-612.
- 41) 同前, PP. 633-636.
- 42) 同前, PP. 617-619.
- 43) 同前, PP. 652-654.
- 44) Carl Berger, OP. Cit, P. 69.
- 45) Foreign Relations of the U.S., 1947, vol. VIII, The Far East (USGPO, 1972), PP. 601-605.
- 46) 同前, PP. 773-774.
- 47) 同前, PP. 779-781.
- 48) 同前, PP. 790.
- 49) •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Jacobs) to the

- Secretary of state, Seoul, September 19, 1947 * 同前,
PP.807-809.
- 50) 同前, P.816 및 PP.827-828.
- 51) U.S.Congress, Senate, The U.S. and the Korean Problem (USGPO, 1953), PP.47-50.
- 52) 同前, P.51.
- 53) 同前, PP.52-53.
- 54) 同前, PP.53-55.
- 55) * Statement by U.S.Department of State on the Views Expressed by Soviet Deputy Foreign Minister Andrei Gromyko Regarding on Armistice in Korea, June 28, 1951. Documents on Korea-American Relations, 1943-1976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Seoul, 1976), PP.138-139.
- 56) U.S.Congress, Senate, OP.cit, PP.67-68. * 休戰交渉狀況에 關한 유엔軍司의 特別報告, 1952.10.18 * 參照.
- 57) Dept.of State, the Korean Problem at the Geneva Conference (USGPO, 1954), PP.33-34.
- 58) * Statement by Y.T.Pyun, ibid, PP.34-39.
- 59) * Statement by John FortezDulles, ibid, PP.45-53.
- 60) * Proposal by Mr. Pyun, May 22 * ibid. PP.123-124.
- 61) * Proposal by Mr.Namil, April 27 * ibid. pp.39-40.

- 62) • Statement by Mr. Eden, May 13 . ibid. PP. 113-117,
특히 P. 115.
- 63) • Statement and proposal by Mr. Chou En-lai, May 3, ,
ibid., PP. 65-69.
- 64) • Proposal by Mr. Chou En-lai, May 22, , ibid., P. 117.
- 65) • Proposal by Mr. Chou En-lai, June 15, ibid., P. 190.
- 66) • Statement by Mr. Smith, June 15, ibid., PP. 190-191.
- 67) 朴奉樞 • 유엔을 통한 統一政策上에 있어서 제네바政治會談의
性格 • (国土統一院, 1970.9, 資料番号 24/50), PP. 18 以下
參照.
- 68) [第 29 次 유엔總회에 보낸 北韓의 備忘錄], UN 文書 A/C
1/1048, 1974 年 10 月 7 日字.
- 69) 1977 年 3 月 9 日 未修交國에 對한 美國人旅行制限 撤廢 및
1977 年 6 月 11 日 Christopher 國務次官의 未修交 14 個國과
關係正常化가 美國政策이라는 表明參照.
- 70) New York Times, 1977 年 8 月 10 日字.
- 71)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 18. 1977, P. 4.
- 72) [第 29 次 유엔總회 韓國問題討議錄] (外交研究院 1975.1),
P. 257.



ABSTRACT

A STUDY ON THE PROPOSED SOLUTIONS OF THE KOREA QUESTION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1943-1977.

Bong-shik Park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policies on the question of Korean peninsula proposed by the major powers and other concerned countries at vari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since the Cairo and the Teheran Conference in 1943. The focus of the study is on the analysis of the details of the policy postures taken by the countries concern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dealing with the Korean question. The study consists of six chapters.

In the first two chapters, the areas of policy agreement and difference on Korea as they were revealed at the summit meetings of the major power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re delineated from an analyt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War is assumed to be a process in which old orders are destroyed and new ones established; war is a period in which policy preferences are given a concrete form of expression.

During the War, the solution of the Korean question was predicated on the principle that Japan must surrender

unconditionally and that its territory in the post-War era should be minimally drawn. The allie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greed to see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Korea. The exact nature of the government of an independent Korea, however, was not decided at this time. It was precisely this issue that later emerged as a most crucial question, particularly after the entrance of the Soviet Union in the Pacific War.

Chapter three deals with the immediate post-War years during which this crucial issue was confronted. The differences of policy prefere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ere revealed in the American-Soviet Joint Committee meetings which began on March 20, 1946. General Shtikov, speaking for the Soviet Union, stated that "The Soviet Union has a keen interest in Korea being a true democratic and independent country, friendly to the Soviet Union, so that in the future it will not become a base for an attack on the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disagreed to the Soviet position which it deemed to be tantamount to a denial of free expression of diverse political viewpoints. The Soviet Union made it clear that it was going to eradicate

those leftist and or nationalist groups which were opposed to the idea of trusteeship.

As this difference between the two superpowers persisted, the future of an independent Korea drifted in a state of limbo. The situation was not helped much by the American position, which was quite self-contradictory, that, while Korea should not be allowed to fall under the Soviet sphere of influence, the peninsula did not have enough strategic importance to warrant American military involvement. Under this circumstance, the United States was best to go ahea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independent government in the South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The Armistice Agreement of 1953 and the Geneva Conference of 1954 are the subject of chapter four. Following a brief treat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va Conference and the Armistice Conference which stipulated that a political Conference be held to settle the Korean question, the chapter analyses the positions taken at the Geneva Conference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unists on the other.

The outcome of the Geneva Conference could be predicted

even before it opened. It opened at a time when the cold war was at its zenith and compromises between the two antagonists were extremely difficult. What made any compromises at the Conference even more difficult was the fact that in Korea there were two separate governments already in existence whose policies ha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ny compromises.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st China at the Conference complicated the situation further.

In the 50s and the 60s, the United Nations was the main arena of the confrontation on the Korean question, a subject for chapter five. Throughout the most part of the perio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as used as an instrument for American foreign policy. The American position with regard to the Korean question was to uphold and confirm the UN resolutions on the Korean question, which were mostly to legitimize the legal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mmunists, on the other hand, attempted either to deny the UN resolutions on the Korean question or maneuver to put North Korea on an equal footing with South Korea in the United Nations.

The Communist attempt was rewarded in 1973 at the 28th General Assembly which, with the help of Communist China and

the third world countries, voted to allow North Korea to establish its delegation at the UN headquarters and join its various specialized agencies. At the same Assembly meeting, the Communist-sponsored resolution to dissolve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 was passed.

In fact, North Korean position on the Korean question at the United Nations changed significantly since 1973. Before 1973, North Korea took the official position that it was illegal for the UN to get involved in the Korean question. After 1973, however, it took the position that the UN should take positive actions to see the end of the foreign intervention in Korea and the discontinuation of the use of the UN flag in Korea. Two years later in 1975 North Korea successfully maneuvered for the United Nations to adopt a resolution calling for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hich, it agreed, were the real parties to the Armistice Agreement of 1953. Realizing that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would tantamount to accepting the North Korean strategy of communitization of the whol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made a counter proposal that a four-party conference should be

made a counter proposal that a four-party conference should be

direction more realistic and practical for the eventual settle-

nces, North Korea will have to modify its position in a

two Korean governments should precede any international confer-

and other Western countries insist that direct talks between the

The study concludes on a note that, if the United States

conditions which is very bad indeed.

change in American policy in Asia but also its domestic economic

direct contacts with the United States reflects not only the

as a hostile country. This new policy of North Korea to open

acts with North Korea which the United States no longer regarded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the American policy to open con-

that the idea of tripartite conference emerged to the surface

Pitso's visit to Washington in March 1978. It is significant

ference which was widely reported at the time of President

The last chapter deals with the idea of tripartite con-

governments themselves through direct talk.

precede by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n

address to the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1975, was to be

proposed by the Secretary of State, Henry Kissinger, in his

Korean governments. The four-party conference, as it was

held among the United States, Communist China, and the two